

발행인 : 김경무 편집인 : 강신용

Vol.4 2002 December

[www.kaepa.org](http://www.kaepa.org)

# KACPA Journal

VISIONS OF KOREAN-AMERIC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2002**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원화로 바꾸셔도 이익입니다”



“달러로 바꾸셔도 이익입니다”



02

다  
리

퍼시픽 유니온 뱅크 고객만이 받을 수 있는 특혜

# 퍼시픽 유니온 뱅크 특별 우대 환율제

한국 내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보기 힘든 유리한 특별우대환율—  
이런 특혜는 퍼시픽 유니온 뱅크 고객들께서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달러를 원화로, 원화를 달러로 바꾸실 때에도  
퍼시픽 유니온 뱅크를 이용해주십시오.

## 특별 우대 환율로 고객을 특별대우 해드립니다.

퍼시픽 유니온 뱅크의 고객 및 신규고객들께 드리는 특별혜택

환전 한도 금액(\$2,500) 제한없이 바꿔드립니다. 최저 수수료 20불 또는 환전금액의 2%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환전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림픽과 버론, 가든 그로브 지점에서 취급하며 지폐만 환전 가능합니다.)



고객을 특별대우 해드립니다

**PACIFIC UNION BANK**  
인합은행 [www.pubbank.com](http://www.pubbank.com)



# 2002-2003 Korean-American CPA Society of So. California

## Board of Directors

- |                   |                  |
|-------------------|------------------|
| ■ Byung Chan Ahn  | ■ Bong Sup Chang |
| ■ David S. Cho    | ■ Stephen Cho    |
| ■ Jung Gil Choi   | ■ Kent K. Choi   |
| ■ Samuel B. Choi  | ■ Kyung Bae Chun |
| ■ Gerald B. Chung | ■ Kenneth C. Han |
| ■ Gilbert Hong    | ■ Sung Ha Hong   |
| ■ Daniel S. Ian   | ■ Albert D. Jang |
| ■ Seok Ho Jeon    | ■ Andrew Kang    |
| ■ Shin Yong Kang  | ■ Byung S. Kim   |
| ■ Henry Kim       | ■ Jae Y. Kim     |
| ■ Jane Kim        | ■ John N. Kim    |
| ■ Ki-Ok Kim       | ■ Kyu Hong Kim   |
| ■ Kung Moo Kim    | ■ Won Chul Kim   |
| ■ Yoon Han Kim    | ■ Seung Y. Kim   |
| ■ Ben H. Lee      | ■ Hwan Jin Lee   |
| ■ James Y. Lee    | ■ Won Sik Lee    |
| ■ Hyun Gwon Lee   | ■ Charles C. Lim |
| ■ Bob G. Moon     | ■ Young Oh       |
| ■ Chulie Park     | ■ Daniel Park    |
| ■ Jung M. Park    | ■ Jae Sun Song   |
| ■ Hong Won Suh    | ■ Benjamin Yoon  |
| ■ David H.S. Yoon | ■ Heung Won Yoon |

## Officers

- |                                     |                                     |
|-------------------------------------|-------------------------------------|
| ■ Kyung M. Kim (President)          | ■ Shin Y. Kang (Vice-President)     |
| ■ Jane Kim (Secretary)              | ■ Seung Y. Kim (Treasurer)          |
| ■ Sung B. Cho (Member Coordinator)  | ■ Seok H. Jeon (Member Coordinator) |
| ■ Martin Park (Website Coordinator) |                                     |

## Auditor/감사

- Gerald B. Chung

## Executive Members/운영위원

- Byung S. Kim   ■ Yoon Han Kim   ■ Kenneth C. Han

## Scholarship Committee/장학위원회

- Sung Ha Hong   ■ Shin Y. Kang   ■ Chang S. Lim

## Editor/회보편집위원

- Seok H. Jeon

**Korean-American CPA Society  
of So. California**  
3660 WILSHIRE BLVD., SUITE 728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5-8586 FAX: (213) 385-8675  
www.kacpa.org

# CONTENTS

|   |    |
|---|----|
| ■ 회장 인사말씀   | 04 |
| ■ 초 대 의 글   | 05 |
| ■ 초 대 의 시   | 06 |
| ■ 2002년 전미주 공인회계사 총연합회를 마치고   | 07 |
| ■ REVIEW OF CALIFORNIA ALLOCATION AND APPORTIONMENT OF INCOME RULES AND SOME OF APPEALS CASES | 08 |
| ■ 현금거래 관련규정 및 세무대책  | 12 |
| ■ BSA 현황  | 15 |
| ■ 권리금이란   | 16 |
| ■ Sarbanes-Oxley Act of 2002: 기업개혁법   | 18 |
| ■ 나의 직업은 공인노력사  | 20 |
|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홈페이지(www.kacpa.org)   | 21 |
| ■ 파산과 개정된 파산법에 관하여  | 22 |
| ■ Enron 사태와 공인 회계사의 위치  | 24 |
| ■ 21세기 세계 경제속의 마키아벨리와 KOREAN BUSINESSMAN  | 27 |
| ■ 412(i) 은퇴연금이란   | 29 |
| ■ 주택 버블 - How to give the trusted advice  | 30 |
| ■ CPA2BANK  | 32 |
| ■ 상업용 부동산 파이낸싱 (Wall Street loan vs Bank loan)  | 33 |
| ■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 34 |





Kyung Moo Kim, CPA  
President, KACPA

**남** 가주 공인회계사 협회가 창립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1983년 십여 명도 안되던 공인회계사들이 모여 만든 협회가 지금은 600여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250여명이 사무실을 가지고 한인 Community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난 20년 동안 한인사회가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창립 초부터 지금까지 매달 60여명이 모이는 협회 세미나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나눌 뿐 아니라 서로의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창립 당시에 계셨던 회원들은 60대가 되셨고 20대였던 사람들은 이제 중년의 공인회계사들이 되었습니다. 회계업무나 세금보고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행해졌으며 지우개

로 수정을 했었으나 이제는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편, 전화, 텔렉스로 의사소통하던 것이 텔렉스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FAX나 E-MAIL이 등장하여 전자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협회에서는 기존의 WEBSITE를 재정비하였습니다. WWW.KACPA.ORG로 방문하여 정보를 얻고 또 나누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KACPA JOURNAL은 네 번째 발간으로 좀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을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으니 양해 해주십시오.

공인회계사의 겸직 허용, BANK SECRECY ACT와 THE USA PATRIOT ACT등과 같은 법으로 인하여 공인회계사 업무와 한인 COMMUNITY에 앞으로 영향을 줄 사안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한인사회가 더 발전되도록 저희 공인회계사들이 더 한층 봉사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회 회원들께서 참여하시는 KACPA JOURNAL이 되도록 원고를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이 KACPA JOURNAL과 WEBSITE를 위해 수고하신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까지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을 믿으며 각 회원들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이있기를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남가주 공인회계사 회장 김 경무

### Past President

|    | PERIOD    | NAME           |
|----|-----------|----------------|
| 1  | 7/83-6/84 | HOWARD Y.REE   |
| 2  | 7/84-6/85 | STEPHEN CHO    |
| 3  | 7/85-6/86 | YOUNG K. OH    |
| 4  | 7/86-6-87 | YOUNG H. SHIN  |
| 5  | 7/87-6/88 | GILBERT G.HONG |
| 6  | 7/88-6/89 | KI OK KIM      |
| 7  | 7/89-6/90 | HENRY KIM      |
| 8  | 7/90-6/91 | JAE Y. KIM     |
| 9  | 7/91-6/92 | BONG S. CHANG  |
| 10 | 7/92-6/93 | SAMUEL B. CHOI |

|    | PERIOD    | NAME            |
|----|-----------|-----------------|
| 11 | 7/93-6/94 | GERALD B. CHUNG |
| 12 | 7/94-6/95 | JUNG M. PARK    |
| 13 | 7/95-6/96 | JUNG G. CHOI    |
| 14 | 7/96-6/97 | BEN H. LEE      |
| 15 | 7/97-6/98 | BOB G. MOON     |
| 16 | 7/98-6/99 | SUNG H. HONG    |
| 17 | 7/99-6/00 | BYUNG S. KIM    |
| 18 | 7/00-6/01 | YOON H. KIM     |
| 19 | 7/01-6/02 | JAE S. SONG     |
| 20 | 7/02-     | KYUNG M. KIM    |



2002년 경제 전망을 내놓을 때만 해도 Double Dip, 즉 경제가 다시 불황 국면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데에 대한 우려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1/4분기 이후 소비 수요가 감소하면서 2001년에 이은 불황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2/4분기 이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자율도 상승이 아닌 하락 쪽으로 기울어졌다. 주식 시장은 기업 수익률의 하락과 기업 회계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추락을 거듭하였으며, 달러의 약세로 인한 해외로의 자금의 유출은 그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기업의 파산과 감원이 증가하고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Commercial 및 Office Building의 Cash Flow는 감소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주택 경기만큼은 주식 시장을 빠져나온 풍부한 자금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 거품이 우려되는 시점까지 끊임없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소비 수요와 함께 2002년의 경제를 떠받친 주요 요소가 되었다. 9.11 사태 이후 계속되는 Terror에 대한 위협과 Iraq와의 전쟁 가능성 및 이에 관련한 경제적 파장이 2002년 하반기 경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으며 이는 2003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03년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는 못 미치나 성장의 내용 면에서는 2002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회복 속도가 상반기에는 오히려 2002년보다도 느리게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비 수요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3/4분기 이후에나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투자수요에 따라 2003년도는 2.6%에서 3%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내년도 실업률은 현재보다는 높은 6% 내지는 6.2% 대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완만한 경제 회복과 낮은 이자율,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및 전쟁이라는 요소 때문에 물가는 금년도 보다 높은 2.4%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6일 단기 금리가 11개월만에 다시 0.5% 하락함으로써 이자율은 40년 만에 최저 치로 2003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바 2/4분기까지는 이자율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경제의 회복 속도에 따라 2/4분기 후반에 이자율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ortgage 금리의 기본이 되는 10년 이상의 장기 이자율은 현재보다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완만한 경제 회복을 감안하면 30년 장기채 이자율은 5.2%에서 5.5%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회복의 여부와 그 속도는 현재로서는 전적으로 투자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그러나 2002년 4/4분기부터 눈에 띄게 위축된 소비 수요가 11월의 이자율 인하로 얼마만큼 힘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과, 또한 이자율 인하가 투자수요를 진작시키는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또한 Iraq와의 전쟁 및 계속되는 Terror의 위협은 이제까지의 예상과는 또 다른 형태의 경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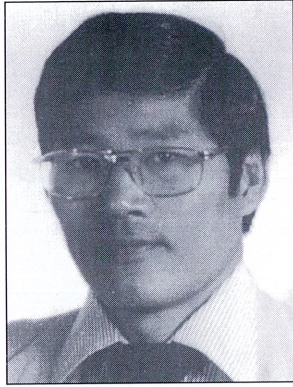
육 중훈 한미은행장

## 2003년 경제 전망

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전망을 한다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두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경제적 이슈와 늘 접하는 사람일수록 그 이슈와 관련된 객관적 분석과 판단은 더욱 더 어렵다는 것을 이번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의 이자율 인하 및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사실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측에서도 0.25%의 이자율 인하를 가지고는 경제 회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으며, 경제 회복을 바라는 위원회의 의지와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가자들에게 보다 확실한 자극을 주기 위해 0.5% 인하라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의도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간파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자율 인하로 인한 단기간의 기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 효과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Inflation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이 경제 정책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시각에 따라, 그리고 정책 결정 및 정책 시행의 시점에 따라 그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으며, 경제 전망 또한 이에 따라 애초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내재한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다면 단기간의 경제 전망은 비교적 정확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 전망에 기초한 사업 계획과 추진은 그렇지 못한 경우 보다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 달맞이



이 관 시인

1937년 사하린 출생  
1965년 도미유학  
샌프란시스코 주립사범대학  
MBA, BA  
국제시인협회 정회원

金방울 따려고  
우리가 다니든 鍾閣 위에는  
밝고도 玲瀟한 달이 뜨지요  
내사랑 님生覺 따라뜨지요

銀河水보다가  
우리가 잠들든 창살 위에는  
밝고도 玲瀟한 달이 뜨지요  
내사랑 님生覺 따라뜨지요

福으로 장식해  
우리만 살아갈 歲月 속에는  
밝고도 玲瀟한 달이 뜨지요  
내사랑 님生覺 따라뜨지요

### 2002 KACPA SEMINAR 안내

Date : July 10, 2002  
Topic : Bankruptcy And Tax Issues  
Speaker : Steven Mather, ESQ  
Sponsor : Smith Barney

Date : August 13, 2002  
Topic : Current Topics in Accounting and Auditing  
Speaker : Al Partington, C.P.A.  
Sponsor : California Center Bank

Date : September 10, 2002  
Topic : EDD Audit and Collection Procedure  
Speaker : Gary Kuwada, ESQ  
Sponsor : Wells Fargo Bank

Date : October 08, 2002  
Topic : Moderated Round Table Discussion  
Regarding Current Income tax Issues  
Speaker : Richard A. Lavine, CPA  
Sponsor : MONY Group

Date : November 08, 2002  
Topic : Korean American CPA Society Seminar  
Speaker : 육 증훈 한미은행장  
Sponsor : Hanmi Bank

Date : November 12, 2002  
Topic : Qualification and Benefit of Social Security  
Speaker : Silvia Lopez, Social Insurance Specialist  
Sponsor : California Bank And Trust

Date : December 10, 2002  
Topic : Reporting of Cash Transaction  
Speaker : Benjamin Hong 행정장,  
Myung Hee Hyun, BSA Officer  
Sponsor : Nara Bank



liability by its net income derived from or attributable to California 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Uniform division of Income for Tax purposes Act (“DITPA”) covered by Section codes 25120-25139. Section 25128 requires that a taxpayer must apportion his business income to this state by means of equally-weighted three-factor formula composed of property factor, payroll factor, and sales factor which was given double weighting in the apportionment formula after January 1, 1993 with an exceptional case where more than 50% of the taxpayer gross business receipts derived from qualified business activities, such as agricultural, extractive, banking, financial and savings and loan activities.

The throw back rule is covered in Section 25135(b), wherein it states that the sale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should be apportioned to this state if the property is shipped from an office, store, warehouse, factory, or other place of storage in this state, and (1) the purchaser i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r (2) the taxpayer is not taxable in the state of the purchase.

To illustrate this by an example, let us assume a California corporation A is engaged in a selling garments in both California and Nevada. Corporation A ships its products to the warehouse in Nevada and delivers products to purchasers in Nevada. Under PL 86-272, the business activities of Corporation A in Nevada is subject to Nevada state franchise or net income tax because the activities in the state exceeded the protected activities. Hence, Corporation A is supposed to be taxed by Nevada for the net income derived from the sales apportioned to Nevada, provided that Nevada imposes such taxes. However, Nevada is one of a few states which do not impose any state income or franchise taxes. Therefore, whatever sales apportioned to Nevada are thrown back to California since he taxpayer is not taxable in the state of purchase. Under the given example, if Corporation A were a Nevada corporation instead of California corporation and shipment of garments to California buyers were delivered from the warehouse maintained in Nevada, then, the garments sales in Nevada could not be thrown back to California because of PL 86-272.

Application of the throw back rule became an important issue in the Appeal of Dresser Industries, Inc., a landmark case that introduced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nexus” whereby a California corporation and its subsidiaries engaged in a multinational unitary business successfully reduced its California franchise tax liability by preventing the FTB from throwing back the sales of foreign countries to California in computing sales factor in apportionment formula.

#### 4. The Appeal of Dresser Industries, Inc. –

In 1982, SBE considered in the Appeal of Dresser Industries, Inc. (Dresser Case”) the issue of whether various sales of a California corporation products in foreign countries through its subsidiaries and representatives are supposed to be thrown back to California in computing the sales factor of apportionment formula s claimed by FTB. Dresser Industries, Inc., (Dresser”) was a California corporation engaged in manu- facturing and wholesaling of high technology products both inside and outside of California. Its foreign sales

were made some by its foreign subsidiaries, some by the sales representatives based on commission agreements, and some by direct sales to foreign customers. Dresser amended its tax returns for 1968, 1969, 1970 and 1971 to claim refunds of \$30,540.80 by assigning foreign commission sales and direct sales to foreign destination in computing sales factor for California.

FTB denied the refund claim of Dresser citing the “throw back rule”. FTB stated that Dresser foreign sales through foreign subsidiaries were subjected to the net income tax by the foreign jurisdiction and therefore, the related foreign sales could not be thrown back to California. However, with respect to the foreign direct sales and commission sales through foreign sales representatives, hrow back rule” should be applied to make them California sales because Dresser did not pay income taxes related to these sales to foreign jurisdiction under United States jurisdictional standards. Thus, the essential issue in this appeal case was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throw back rule for the sales in foreign countries.

California Revenue Section Code 25122 states that, for the purpose of allocating and apportioning income under UDITPA, a taxpayer is taxable in another tate” if (a) in that state it is subject to a net income, franchise tax measured by net income, a franchise tax for privilege of doing business, or a corporate stock tax, or (b) that state has jurisdiction to subject the taxpayer to a net income tax regardless of whether, in fact, the state doe or does not. To be reminded is the fact that UDITPA defines the “state” to include not only a state of the United States but also any foreign country, according to Section Code 25120 (f).

In its ruling in Dresser Case, SBE stressed two important points in the application of throw back rule. First of all, whether or not the taxpayer business activities in the state (foreign country in this case) are sufficient to give the state jurisdiction to tax net income under the Constitution similar to the jurisdictional standards applicable to a state of the Unites Stated applied in the state. Secondly, although Section 25122 stated that a state does not have jurisdiction to tax on income or franchise tax when a state is prohibited by PL 86-272 from imposing a net income tax, such prohibition should not be construed to apply to the situations when the income to be taxed is derived from foreign commerce. SBE used an interesting analogy to support its assertion; if a taxpayer is a Canadian corporation that had sales representatives in California who merely solicited orders from California customers, and the orders were approved in Canada and filled by shipments from a Canadian factory, PL 86-272 would not prevent California from levying a net income tax on the taxpayer, simply because PL 86-272 does not cover foreign commerce. The fact that Section 25122 does not authorize the application of PL 86-272 to foreign commerce with a California destination compels, according to SBE opinion, the same result where the stream of commerce flows to a foreign destination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uniformity. Hence, it concluded that as long as these foreign countries have Constitutional jurisdiction to levy income taxes on the business activities of Dresser and its foreign subsidiaries, the foreign



destination sales should not be thrown back to California.

This conclusion was taken by some to the effect that creation of onstitutional nexus” prohibits the application of throw back rule by California, although such nexus may entail income or franchise tax liability to the foreign jurisdiction.

#### 5. Application of “Dresser” Case for Refund Claim -

It was the fall of 1997 when a corporation K was referred to our firm for compil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The corporation had been engaged in exporting A/C related products to the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51% of the outstanding common stocks was owned by a Korean corporation engaged in both manufacturing and wholesale of the similar A/C products, whereas the remaining 49% being owned by the shareholder of K. The review of the 1994, 1995 and 1996 corporation tax returns of K prepared by one of Korean American CPA in Los Angeles revealed that 1) 1994 was not a good year, 2) Form 1120 did not show any item for amendment to claim refund, and 3) Form 100 showed the following:

|                           | 1995         | 1996         |
|---------------------------|--------------|--------------|
| Sales                     | \$22,105,556 | \$15,144,749 |
| Other receipts            | 71,955       | 46,571       |
| Fixed assets              | 95,517       | 126,023      |
| Wages and salaries        | 230,148      | 256,816      |
| Calif. Franchise tax paid | 82,346       | 22,448       |

Company K has not filed any combined report to FTB nor used Schedule R to apportion business income to California using three factors, as referred to under 3. Throw Back Rule.

Discussion with the company accounting staff revealed that export comprised majority of Company sales.

Based on the information collected, it was almost ready-made case to apply the case of “Dresser Industries” to claim refund of California franchise tax by eliminating foreign-destination sales from the numerator of California sales.

In this connection, there was one concern that had to be satisfied before proceeding to the preparation of amended franchise tax returns; the Korean corporation owned 51% stock interest and therefore FTB was in a position to apply the “unitary business concept” for K and the Korean affiliated company. This meant that the complet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Korean corporation for 1995 and 1996 were needed to ascertain that the taxable income apportioned and allocated to California based on the combined taxable income of the two corporations would not create additional tax problem to K, not to say of the intended refund claim. Depending upon the taxable income of the Korean corporation and the average apportionment percentage for California, you may end up in paying additional California franchise tax despite the fact that your intention was to get refund from FTB as long as you ignore to take into consideration all the facts related to California unitary business concept.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Korean affiliated company were

subjected to scrutiny to see the taxable income allocated and apportioned to California based on three factors would not generate additional tax to K. All the indications from the analysis were for the amendment for refund claims for both 1995 and 1996. The actual amended tax returns for 1995 and 1996 filed to FTB did not use the combined reports based on the unitary business concept because the ownership control of 50% or greater is only one of the many other factors that determine whether or not a unitary business present. Such factors as “centralized management and purchasing”, “financing” and “centralized advertizing” were not present between the two company, whereas they were using almost same “trade names” and constant “information and know-how” exchanges have been mad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both companies.

Accordingly, Schedule R were used based on the three factors of Co. K alone, as follows:

|                        | Total within and outside California | Total within California | Percent within California |
|------------------------|-------------------------------------|-------------------------|---------------------------|
| <b>1996</b>            |                                     |                         |                           |
| Total Property         | 126,023                             | 126,023                 | 100.00                    |
| Total Payroll          | 256,816                             | 256,816                 | 100.00                    |
| Total Sales            | 15,191,320                          | 282,852                 | 1.862                     |
| Total percent          |                                     |                         | 201.862                   |
| Average apportionment% |                                     |                         | 50.47%                    |

|                         |            |         |         |
|-------------------------|------------|---------|---------|
| <b>1995</b>             |            |         |         |
| Total Property          | 95,517     | 95,517  | 100.00  |
| Total Payroll           | 230,148    | 230,148 | 100.00  |
| Total Sales             | 22,177,511 | 252,595 | 1.139   |
| Total percent           |            |         | 201.139 |
| Average apportionment % |            |         | 50.285  |

As a result of simply reducing foreign-destination sales from the numerator of the sale factor in the apportionment formula, \$14,908,468 and \$21,924,916 in 1996 and 1995, respectively, the average apportionment % for California amounted to 50.47% and 50.285%, generating refund claims of \$9,393 and \$40,636, respectively, for 1996 and 1995.

#### 5.1 FTB’s Denial for Refund Claims –

As was expected from the moment the amended tax returns were filed, FTB took almost a year to deny our refund claims after tedious bureaucratic information requests and the questions associated with ( a )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oth K and its majority stockholder company in Seoul, Korea for 1995 and 1996, ( b ) detailed schedule/summary of actual sales by state and foreign countries for 1995 and 1996, and ( c ) detailed schedule/summary of 1995 and 1996 sales by place of product origin and destinations, and whether or not any sale tax return filed to any state where the products were purchased for shipment overseas.



liability by its net income derived from or attributable to California 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Uniform division of Income for Tax purposes Act (“DITPA”) covered by Section codes 25120-25139. Section 25128 requires that a taxpayer must apportion his business income to this state by means of equally-weighted three-factor formula composed of property factor, payroll factor, and sales factor which was given double weighting in the apportionment formula after January 1, 1993 with an exceptional case where more than 50% of the taxpayer gross business receipts derived from qualified business activities, such as agricultural, extractive, banking, financial and savings and loan activities.

The throw back rule is covered in Section 25135(b), wherein it states that the sale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should be apportioned to this state if the property is shipped from an office, store, warehouse, factory, or other place of storage in this state, and (1) the purchaser i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r (2) the taxpayer is not taxable in the state of the purchase.

To illustrate this by an example, let us assume a California corporation A is engaged in a selling garments in both California and Nevada. Corporation A ships its products to the warehouse in Nevada and delivers products to purchasers in Nevada. Under PL 86-272, the business activities of Corporation A in Nevada is subject to Nevada state franchise or net income tax because the activities in the state exceeded the protected activities. Hence, Corporation A is supposed to be taxed by Nevada for the net income derived from the sales apportioned to Nevada, provided that Nevada imposes such taxes. However, Nevada is one of a few states which do not impose any state income or franchise taxes. Therefore, whatever sales apportioned to Nevada are thrown back to California since he taxpayer is not taxable in the state of purchase. Under the given example, if Corporation A were a Nevada corporation instead of California corporation and shipment of garments to California buyers were delivered from the warehouse maintained in Nevada, then, the garments sales in Nevada could not be thrown back to California because of PL 86-272.

Application of the throw back rule became an important issue in the Appeal of Dresser Industries, Inc., a landmark case that introduced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nexus” whereby a California corporation and its subsidiaries engaged in a multinational unitary business successfully reduced its California franchise tax liability by preventing the FTB from throwing back the sales of foreign countries to California in computing sales factor in apportionment formula.

#### 4. The Appeal of Dresser Industries, Inc. –

In 1982, SBE considered in the Appeal of Dresser Industries, Inc. (resser Case”) the issue of whether various sales of a California corporation products in foreign countries through its subsidiaries and representatives are supposed to be thrown back to California in computing the sales factor of apportionment formula s claimed by FTB. Dresser Industries, Inc., (resser”) was a California corporation engaged in manu- facturing and wholesaling of high technology products both inside and outside of California. Its foreign sales

were made some by its foreign subsidiaries, some by the sales representatives based on commission agreements, and some by direct sales to foreign customers. Dresser amended its tax returns for 1968, 1969, 1970 and 1971 to claim refunds of \$30,540.80 by assigning foreign commission sales and direct sales to foreign destination in computing sales factor for California.

FTB denied the refund claim of Dresser citing the “throw back rule”. FTB stated that Dresser foreign sales through foreign subsidiaries were subjected to the net income tax by the foreign jurisdiction and therefore, the related foreign sales could not be thrown back to California. However, with respect to the foreign direct sales and commission sales through foreign sales representatives, hrow back rule” should be applied to make them California sales because Dresser did not pay income taxes related to these sales to foreign jurisdiction under United States jurisdictional standards. Thus, the essential issue in this appeal case was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throw back rule for the sales in foreign countries.

California Revenue Section Code 25122 states that, for the purpose of allocating and apportioning income under UDITPA, a taxpayer is taxable in another tate” if (a) in that state it is subject to a net income, franchise tax measured by net income, a franchise tax for privilege of doing business, or a corporate stock tax, or (b) that state has jurisdiction to subject the taxpayer to a net income tax regardless of whether, in fact, the state doe or does not. To be reminded is the fact that UDITPA defines the “state” to include not only a state of the United States but also any foreign country, according to Section Code 25120 (f).

In its ruling in Dresser Case, SBE stressed two important points in the application of throw back rule. First of all, whether or not the taxpayer business activities in the state (foreign country in this case) are sufficient to give the state jurisdiction to tax net income under the Constitution similar to the jurisdictional standards applicable to a state of the Unites Stated applied in the state. Secondly, although Section 25122 stated that a state does not have jurisdiction to tax on income or franchise tax when a state is prohibited by PL 86-272 from imposing a net income tax, such prohibition should not be construed to apply to the situations when the income to be taxed is derived from foreign commerce. SBE used an interesting analogy to support its assertion; if a taxpayer is a Canadian corporation that had sales representatives in California who merely solicited orders from California customers, and the orders were approved in Canada and filled by shipments from a Canadian factory, PL 86-272 would not prevent California from levying a net income tax on the taxpayer, simply because PL 86-272 does not cover foreign commerce. The fact that Section 25122 does not authorize the application of PL 86-272 to foreign commerce with a California destination compels, according to SBE opinion, the same result where the stream of commerce flows to a foreign destination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uniformity. Hence, it concluded that as long as these foreign countries have Constitutional jurisdiction to levy income taxes on the business activities of Dresser and its foreign subsidiaries, the foreign



destination sales should not be thrown back to California.

This conclusion was taken by some to the effect that creation of onstitutional nexus” prohibits the application of throw back rule by California, although such nexus may entail income or franchise tax liability to the foreign jurisdiction.

5. Application of “Dresser” Case for Refund Claim -

It was the fall of 1997 when a corporation K was referred to our firm for compil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The corporation had been engaged in exporting A/C related products to the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51% of the outstanding common stocks was owned by a Korean corporation engaged in both manufacturing and wholesale of the similar A/C products, whereas the remaining 49% being owned by the shareholder of K. The review of the 1994, 1995 and 1996 corporation tax returns of K prepared by one of Korean American CPA in Los Angeles revealed that 1) 1994 was not a good year, 2) Form 1120 did not show any item for amendment to claim refund, and 3) Form 100 showed the following:

|                           | 1995         | 1996         |
|---------------------------|--------------|--------------|
| Sales                     | \$22,105,556 | \$15,144,749 |
| Other receipts            | 71,955       | 46,571       |
| Fixed assets              | 95,517       | 126,023      |
| Wages and salaries        | 230,148      | 256,816      |
| Calif. Franchise tax paid | 82,346       | 22,448       |

Company K has not filed any combined report to FTB nor used Schedule R to apportion business income to California using three factors, as referred to under 3. Throw Back Rule.

Discussion with the company accounting staff revealed that export comprised majority of Company sales.

Based on the information collected, it was almost ready-made case to apply the case of “Dresser Industries” to claim refund of California franchise tax by eliminating foreign-destination sales from the numerator of California sales.

In this connection, there was one concern that had to be satisfied before proceeding to the preparation of amended franchise tax returns; the Korean corporation owned 51% stock interest and therefore FTB was in a position to apply the “unitary business concept” for K and the Korean affiliated company. This meant that the complet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Korean corporation for 1995 and 1996 were needed to ascertain that the taxable income apportioned and allocated to California based on the combined taxable income of the two corporations would not create additional tax problem to K, not to say of the intended refund claim. Depending upon the taxable income of the Korean corporation and the average apportionment percentage for California, you may end up in paying additional California franchise tax despite the fact that your intention was to get refund from FTB as long as you ignore to take into consideration all the facts related to California unitary business concept.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Korean affiliated company were

subjected to scrutiny to see the taxable income allocated and apportioned to California based on three factors would not generate additional tax to K. All the indications from the analysis were for the amendment for refund claims for both 1995 and 1996. The actual amended tax returns for 1995 and 1996 filed to FTB did not use the combined reports based on the unitary business concept because the ownership control of 50% or greater is only one of the many other factors that determine whether or not a unitary business present. Such factors as “centralized management and purchasing”, “financing” and “centralized advertizing” were not present between the two company, whereas they were using almost same “trade names” and constant “information and know-how” exchanges have been mad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both companies.

Accordingly, Schedule R were used based on the three factors of Co. K alone, as follows:

|                        | Total within and outside California | Total within California | Percent within California |
|------------------------|-------------------------------------|-------------------------|---------------------------|
| <b>1996</b>            |                                     |                         |                           |
| Total Property         | 126,023                             | 126,023                 | 100.00                    |
| Total Payroll          | 256,816                             | 256,816                 | 100.00                    |
| Total Sales            | 15,191,320                          | 282,852                 | 1.862                     |
| Total percent          |                                     |                         | 201.862                   |
| Average apportionment% |                                     |                         | 50.47%                    |

|                         |            |         |         |
|-------------------------|------------|---------|---------|
| <b>1995</b>             |            |         |         |
| Total Property          | 95,517     | 95,517  | 100.00  |
| Total Payroll           | 230,148    | 230,148 | 100.00  |
| Total Sales             | 22,177,511 | 252,595 | 1.139   |
| Total percent           |            |         | 201.139 |
| Average apportionment % |            |         | 50.285  |

As a result of simply reducing foreign-destination sales from the numerator of the sale factor in the apportionment formula, \$14,908,468 and \$21,924,916 in 1996 and 1995, respectively, the average apportionment % for California amounted to 50.47% and 50.285%, generating refund claims of \$9,393 and \$40,636, respectively, for 1996 and 1995.

5.1 FTB’s Denial for Refund Claims –

As was expected from the moment the amended tax returns were filed, FTB took almost a year to deny our refund claims after tedious bureaucratic information requests and the questions associated with ( a )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oth K and its majority stockholder company in Seoul, Korea for 1995 and 1996, ( b ) detailed schedule/summary of actual sales by state and foreign countries for 1995 and 1996, and ( c ) detailed schedule/summary of 1995 and 1996 sales by place of product origin and destinations, and whether or not any sale tax return filed to any state where the products were purchased for shipment overseas.



FTB's denial letter dated October 29, 1998 listed the following reasons to justify their positions:

- K has an office location and employees in California and, accordingly, K has taxable presence in California, while K does not have any "exus" or connection with other state, because no sale tax return had been filed and K purchasing agents or salesmen were not stationed in the states of product origins and in the foreign countries where actual sales took place;
- K is not taxable neither in shipper states nor in the destination state and, therefore, K is taxable in the state of California under the "throw-back Rule", in accordance with the Code Section 25135(a)(7)(B).

#### 5.2 Filing of Appeal to the Board of Equalization –

- Now that the FTB formally denied our refund claims, the appeal was filed with SBE stating ( a ) a summary of facts and events developed between the taxpayer and FTB since the filings of amended tax returns, ( b ) statement of facts, and ( c ) the points and cases in support of the taxpayer's position.

- In addition to the citing of the case of Dresser Industries, Inc., 3 SBE 1003, one emphasis was stressed in the appeal that the FTB's request for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taxpayer's majority stockholder company in overseas was definitely made with the purpose of imposing California unitary tax, and the FTB's power to exercise the jurisdiction of California unitary tax on the foreign income is based on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nexus" between the California taxpayer and the foreign affiliated company.

- To make our case stronger, our appeal letter included another appeal case – the Appeal of Finnigan Corporation, 88-SBE-022, 8-25-88, in which SBE specifically ruled that the word "taxpayer" as used in Cal. Rev. & Tax Code Sec. 25135 (b) means "all of the corporations within the unitary group". According to the 1999 California Tax Handbook published by Research Institute of America, even FTB administrative practice with respect to multi-entity apportionment formula is changed in such a way that the sales of goods shipped from California to other states are to be assigned to this state under the throwback rule only when none of the corporations within the unitary group is taxable within the destination state.

- It took almost eight months after the appeal paper was filed with the SBE that a letter was received, not from the Appeal Division of SBE, but from the Legal Branch of the FTB.

One of the tax counsels of the FTB wrote the letter, asking for any evidence to indicate that the foreign majority stockholder company has been paying taxes to the Korean Government.

The letter also contained a clause to the effect that FTB would send refund checks with due interests as soon as the requested evidence is forwarded.

- Certificate of corporation tax payment issued by the local director of the Korean Internal Revenue District was obtained from the

taxpayer's affiliated company in Korea, and the certificate was mailed to the tax counsel of the FTB, with our letter clearly stating that "you requested the evidence of tax payment based on the Appeal Case of Finnigan, 88-SBE-022(August 25, 1988); however, we do not believe that this kind of tax payment evidence is even necessary under the Appeal Case of the Dresser Industries, Inc., 3 SBE 1003 (June 29, 1982). Shortly after the evidence was mailed, the long over-due refund checks were received with additional interest payment of over \$14,000.

#### 6. Conclusion –

This article attempted to review some of the protected business activities under Federal PL 86-272 and how the Federal law is applied to the throw back rules under California Section Code 25122,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the foreign commerce of a California corporation that established constitutional nexus with foreign jurisdiction through its foreign subsidiary or division or affiliated company. A couple of SBE appeal cases relevant to the application of throwback rule to the foreign sales through the subsidiaries was reviewed so that our CPA colleagues may equip themselves with full-fledged understanding of the laws and cases to advise customers under similar situations to formulate and structure overseas constitutional nexus with an aim to minimize overall tax liability of overseas and California.



## 현금거래 관련규정 및 세무대책



임 창수 CPA

**현**금을 좋아하는것은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마찬가지이나 특히 한인들이 현금을 선호하고 현금거래를 많이 하고 있으며 또한 이민사회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은 Business 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현금거래에는 특별한 보고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런 법규들이 왜 있는지를 알고 어떤경우에 적용 되는가를 알아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약사범이나 밀수등에 관련된 범죄자들은 돈 세탁 (Money Laundering) 과정을 통하여 검은돈을 적법한 돈으로 바꾸려고 하게 됩니다. 은행등 금융 기관에서 보고 하는 현금거래 관련 보고서들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추적 하는 사법당국에게 많은 단서, 때로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거래 보고 규정의 근본 목적은 돈세탁 (Money Laundering) 행위를 찾아 내어 탈세 및 마약거래등 범죄행위를 적발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911 테러 사태후에는 그 당시 테러 관련 자금이 돈세탁 행위를 통하여 조달 되었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Bush 대통령은 2001년 10월 26일 USA Patriot Act 를 승인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규정을 더욱 강화 시킴과 동시에 특히 외국인 과 외국인의 구좌에 대한 조치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 자금이 Small Business 를 통해서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행등 금융기관뿐 아니라 현금을 취급하는 모든 Small Business 들도 규정 준수의 압력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 Types of Currency Reports

1. Form 4789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은행등 금융기관 (check cashing 업소 포함) 에서 \$10,000 이상이 관련된 거래 발생시 보고함. 1996년에

12,752,124건이 보고됨. 2001년도에는 약 13,000,000건 이 보고 되었음.

2. Form 8362 Currency Transaction Reports by Casinos (CTRC)연간매상 백만불이 넘는 Casino 에서 사용함. 1996년에 총 151,314건이 보고됨.

3. For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개인으로서 외국 금융기관 에 갖고있는 구좌의 합계가 \$10,000 이 넘을시 보고함. 1996년에 149,149건이 보고됨.

4. Form 8300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 금융기관 이외의 모든 Business는 \$10,000 이상이 관련된 상거래 발생시 보고함. 1996년에 128,772건이 보고됨.

5. 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S)  
은행등 금융기관 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의심이 가는 거래 발생시 보고함. 1996년에 56,114건이 보고됨. 2001년도에는 약 130,000건이 보고 되었음.

6. Customs Form 4790 Report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 (CMIR) 개인이 \$10,000 이상의 현금을 국내로 반입 하거나 국외로 반출시 세관에 신고함. 1996년에 162,389건이 보고됨.

### Currency Banking and Retrieval System (CBRS)

1. IRS Detroit Computing Center (DCC)  
모든 CTR 은 30일 이내에, SAR 은 10일 이내에 CBRS 에 올라가 IRS를 비롯한 연방및 주정부의 다양한 감독 사정 수사기관에 의해사용되며 원본은 10년간 보관함. Electronic Data는 영구히 보관.

2. IRS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1994년 부터 1997년 까지 4년간 약 1,030건의 조사가



CTR 에 의해 실시 되었음. 탈세 및 범죄 수사에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하고 있음.  
 보고대상 Business for Form 8300 개인적인 거래를 제외하고 \$10,000 이상을 주고 받은 모든 Business, 보석상, 가구점, 자동차 딜러, 부동산, 변호사, 전당포, 여행사 등.

**보고대상 거래 (Transactions)**

1. 일시에 \$10,000 이상을 받을시
2. 일년내 \$10,000 이상을 나누어 받을시
3. 연관된 거래로 \$10,000 이상을 받을시
4. 의심이 가는 수상한 거래 - \$10,000 이하로 쪼개서 혹은 여러 지점을 이용등
5. Business가 아닌 개인적인 거래는 보고대상이 안됨

**What is Cash?**

1. 미국 및 외국 지폐 및 Coin
2. \$10,000 이하의 Cashier Check, Bank Draft, Traveler Check, or Money Order
3. 예외조항 대출서류로 증명된 은행 Loan, 기타

**보고시기 및 내용**

1. 일시불 혹은 분할금 합계가 \$10,000 을 넘은 일시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함.
2. 보고대상자의 이름, 주소, Social Security, Employer Identification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Business Name & Type, 확인 서류명, 일시, 금액등.
3. 보고하는자의 Business Name, 주소, ID 번호등
4. 보내실 주소 Internal Revenue Service Detroit Computing Center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
5. Statement to Buyer 다음해 1월 31일 까지 구입자에게 Form 8300을 보고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함. Business Name과 주소, 연락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IRS에 보고한 금액의 총 합계를 함께 알려 주어야 함.

**Penalties**

1. Civil Penalty 고의적인 (intentionally disregard) 경우 최소 \$25,000 혹은 보고했어야 할 금액의 \$100,000 까지 벌금.
2. Criminal Penalty 악의적인 (willful failure) 경우 \$250,000 (주식회사의 경우 \$500,000)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Form TD F 90-22.53 (Designation of Exempt Person)**

은행에서 특정 고객을 현금거래 보고 규정에서 제외 시키기 위해 사용 함. 통상적으로 현금 거래가 많은 Business로서 \$10,000 이상의 거래가 빈번하고 일년이상 구좌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해당됨.  
 Ineligible Business Money Service Business (check cashing), 자동차 딜러, 법률, 회계, 의료업, 부동산업등은 면제가 안됨.

High-Risk Money Laundering and Related Financial Crime Areas (HIFCAs) 연방 법무부와 재무부는 2000년 4월에 다음의 4개 지역을 특별히 지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여 조사 해 오고있음.

- Mew York/New Jersey
- San Juan/Puerto Rico
- Los Angeles
- Systems HIFCA: Texas 와 Arizona 주의 Mexico 국경지역을 통한 money laundering

**High Risk Customer/Case(위험수위가 높은 고객/경우)**

1. Normal Business 와 상반된 금융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구좌
2. 갑작스럽게 Business 거래 Pattern 이 변화된 구좌 (짧은 시일 내에 기대이상의 거래량이나 Cash Volume 이 있는 거래)
3. 현금 거래 보고를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작된 거래를 하는 구좌 (\$9,000, \$3,000 등을 가까운 시일 내에 비슷한 금액의 Cashier's Check 이나 Money Order로 교환 또는 Check 을 Issue 하는 구좌)
4. 업무에 관련없이 빈번한 송금 거래가 있고 또 Cashier Check, Money Order 등을 구입하는 구좌
5. 업무에 관련없이 빈번하게 Cashier's Check, Money Order 등을 입금하고 현금으로 출납하는 경우
6. 직업에 상반되는 구좌 거래 내역 (가정주부, 학생 구좌에 거래의 빈번한 송금 거래 또는 입금이 있은후 곧 뒤 따르는 Transfer 가 있는 구좌)
7.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여러개의 비즈니스 구좌, 개인 구좌가 있고 또 구좌간의 거래가 빈번한 구좌
8. 개인구좌를 비즈니스 구좌처럼 사용하는 구좌
9. \$3,000 미만의 Cashier's Check, Money Order 등을 계속적으로 구입하는 구좌
10. 외국인 구좌에 내국인이 대리인으로 거래가 빈번한 구좌

**결론 및 사례**

이상에서 알수 있듯이 Suspicious Activity Report 는 5년 사이에 보고 건수가 두배 이상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고 건수가 비교적 적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Cash Transaction Report 보다는 Suspicious Activity Report 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으며 Suspicious Activity Report 에 보고된 거래는 훨씬 쉽게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금을 다루는 모든 Small Business 의 보고의무가 강조되고 중요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보고는 그동안 실제로 지키지 않았던 규정들이고 또한 새로운 규정들이 많으므로 익숙치가 않아서 실제 적용에는 혼동이 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또한 각자의 경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 공인회계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다리뼉고 산다”



# 나라은행 EZee체킹

잔고가 모자라는 수표를 먼저 지불하여  
부도를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빠듯한 이민생활 - 봉급날짜와 페이먼트 날짜를 맞추느라 가끔 조마조마  
하셨죠? 이제, 나라은행 EZee 체킹으로 마음 편하게 체크를 사용하십시오.

- 무료 무제한 수표 발행 • 결제 수표의 보관문제를 해결한 이미지뱅크 스테이트먼트
- 결제된 수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이미지
- 시간을 절약하는 자동이체 서비스 • 무료로 매일 잔고, 송금, 부도수표를 알려주는 콜 서비스
- 미전국에서 현금인출 및 구매 가능한 VISA 데빗 카드 발급

**Free** 체킹도 있습니다.



나라 EZee 체킹을 개설하시는  
신규고객께 고급 보온 커피 머그잔과  
처음 체크 북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착순 1,000명)



**나라은행**

www.narabank.com

\*Nara Bank may, at its sole discretion, provide overdraft protection, but generally allow no more than \$2,000.00 for personal accounts and \$5,000.00 for business accounts. Additional terms and conditions apply. Please visit us for more details. The minimum opening deposit is \$100.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ccount including applicable fees and charges that are disclosed in the Deposit Account Agreement, Product Disclosure, and Other Service Charge schedule are available at the branch.

■월서 본점 (213) 389-2000 ■아로마센터 지점 (213) 235-3220 ■올림픽 지점 (213) 235-3100 ■다운타운 지점 (213) 763-1122 ■토렌스 지점 (310) 257-0100 ■밸리 지점 (818) 654-0200  
■플러튼 지점 (714) 736-8800 ■글렌데일 지점 (818) 551-0700 ■세리토스 지점 (562) 468-0900 ■살리큰 밸리 지점 (408) 557-2000 ■오클랜드 지점 (510) 302-0505 ■플러밍 지점 (718) 886-6611  
■잭슨 하이츠 지점 (718) 335-2000 ■맨하탄 지점 (212) 268-4111 ■시애틀 용자 사무소 (253) 815-9757 ■시카고 용자사무소 (773) 736-2881 ■뉴저지 용자사무소 (201) 313-8111





9-11 사태로, 금융계에서는 하나의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새로운 법인 USA PATRIOT ACT(테러방지법)를 통한 미국 보호법)의 시행을 비롯하여 BSA(Bank Secrecy Act 은행 비밀법)와 AML(Anti-Money-Laundering 돈 세탁 금지법)들의 감사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벌금을 무는 등의 행정적인 제재 조치를 받는 경우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금융기관들은 많은 경영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적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해 첨단 전산 시설을 도입하고 전문적으로 Suspicious Activity(혐의 거래)만 조사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게끔 되었다.

BSA법의 목적은, Terrorist들의 재정을 발본색원하여 근절시키고, 또한 마약밀매, 무기밀매 등의 여러 종류의 범죄행위를 찾아내기 위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Tax를 줄이기 위해, 혹은 IRS 감사를 피할 수 있다고 잘 못 인식되어 이용되는 분산거래(Structure)가 BSA법을 어기는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또한 많은 현찰이나 은행 수표, 또 송금을 이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어떤 거래들을 은폐 하려하는 시도들이 BSA법의 관점에서 보면 수상한, 의혹이 가는 거래들로 보이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BSA법에는 여러 가지의 규정이 있다. 그 중에 현금거래 보고서(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규정으로 하루에 한사람이 \$10,000이상의 현찰거래를 일으켰을 때 IRS에 보고하는 것이고, 송금 금액이 \$3,000이상 될 때, 또한 은행 수표를 현찰로 \$3,000이상 매입하였을 때 은행에 기록을 남겨 놓아야 되는 것 등이 있다.

이 밖에 일반에게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혐의 사실 보고서(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 규정이 있다. SAR 보고대상이 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가짜서류를 제출한다든가, 전산시설의 Hacking, 또는 사기 등의 금융기관에 위해가 되는 혐의가 있을 때에 보고를 하는 것이다. 둘째로, 특히 BSA법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나 고객들에 의한 돈 세탁이나 분산거래(Structure) 등의 혐의사실이나 혹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각 고객들의 비즈니스나 직업 등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여 그에 적합하지 않은 거래나 납득이 가지 않는 거래가 일어나면 혐의 사실 보고서(SAR)를 이용하여 이를 당국에 보고하게끔 하고 있다. 혐의거래 보고서는 FINCEN(Financial Institutions Criminal Enforcement Net Work)으로 보고하고 그곳에서 필요에 따라 FBI, IRS, Police Department와 같은 다른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 명의  
나라은행 SVP & BSA Officer

## BSA 현황

혐의거래 보고서 규정(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에 관련하여 한인 고객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BSA법을 잘 못 인식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라고 본다. 한 예를 들면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현찰이라고 할 때 IRS에 보고되는 CTR을 피하려고 \$10,000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서 입금을 하거나, 은행수표를 매입하고, 송금을 하거나 또 현금인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럴 경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Structure라는 분산거래로 간주 될 수 있고, 그 현찰들의 근거가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 Structure 자체가 BSA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은행은 SAR 보고를 하여야만 된다. 또한 SAR은 CTR과 달라서 보고사실을 당사자에게 절대로 알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특히 정부기관은 현금거래를 많이 하고 Structure 즉 분산입금이나 인출이 비교적 많은 한인들의 현찰 거래 보고서(CTR)나 혐의 거래 보고서(SAR)를 앞으로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기관은 SAR 보고서를 CTR보다 더욱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외국인(NRA: Non-Resident-Alien) 구좌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모든 거래를 양성화하고 또한 거래들에 관련하여 Documentation을 철저히 하고, 특히 현찰거래에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 입금하여 의구심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연히 차명 구좌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분산하거나, 여러 날로 나누어 입금하고, 여러 지점을 이용하여 CTR을 피하려고 한다면 은행은 첨단 전산시설을 통해서 이를 발견하게되고 SAR 보고를 하게 마련일 것이다.





홍 순백 Michigan 공인회계사

**권**리금, 이는 너무도 우리 한인들에게는 친숙한 비즈니스 용어다. 권리금이란 말 그대로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업명칭으로, 특정 조건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금전으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사업체를 팔고, 살 때에 지불한 금액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산의 실물가치(현 시세)보다 더 많을 때에는 이것을 웃돈 또는 권리금이라고 칭한다.

재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Premium 과 같은 의미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 개발비의 투하로 얻은 특허권, 상표권, 또는 별도 계약으로 얻어진 Franchise 나 Royalty로 뒷받침 되는 영업권 과 같은 무형 자산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 권리금이란

### 1. 권리금의 상황적 배경

권리금의 생성 배경은 이자, 환율, 물가, 부동산 시세 등의 여러 경제 지표가 획일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사회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모든 지표가 안정되어 있다고 보는 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노동수요가 대량 이민에 의해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노임이나 노동공급량에 있어 항상 이중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권리금의 요인은 결국 미국의 대 도시가 중심이 된 외곽 지역(Marginal Area)에 존재하는 이중 가치체계(Dual Value System)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중 가치체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주로 대 도시와 교외지역의 부동산 시세 차이, 인종간의 직업별 선호도, 이민 그룹과 주류 백인 그룹간의 임금 격차(노동의 질에 따른)등에 기인하는데 이 때문에 이민 그룹의 생업 장소는 주류 백인 그룹들이 비어두고 나간 대도시가 되었으며 여기서 통용되는 사업체나 건물의 가치평가 기준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인종(주로 주류 백인 그룹)에서는 전혀 받아 들여 지지 않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 2. 권리금의 종류와 일반 개념

권리금이란 높은 이윤(초과 영업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Goodwill과도 비슷한 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정상이던 비정상이던 누가 먼저 발견, 취득하였느냐에 따라, 일시적이긴 하지만 높은 비 영업 이익을 얻을 잠

#### a. 권리금과 Goodwill의 차이점

권리금이라 하면 통상 초과영업이윤 때문에 생긴 웃돈, 즉 Goodwill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Goodwill은 권리금을 형성하는 필수적 요인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곧 권리금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권리금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위해서 권리금과 Goodwill의 차이점을 하나, 하나 설명해 본다.

\* 권리금은 어떤 형편에 따라(Premium이나 영업권, 회원권 등) 독립적으로도 존재할 수도 있지만, Goodwill은 사업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거나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영업의 계속성(Going Concern Assumption)을 기본 전제로 한다.

\* 권리금은 때로는 초과이윤동기에 관계 없이도 존립하지만 Goodwill은 반드시 과거의 역사적 기록에 따라서 입증되는 초과이윤에 기초하고 있다.

\* 권리금은 비록 과거의 실적이 적자상태였더라도 사업을 취득하고자 하는 구입자의 사정에 따라서 인정될 수도 있는데 반하여, Goodwill은 구입자의 개인여건에 관계없이 지난날의 사업실적이 불량하면 존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 이상의 두 가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은 다분히 주관적 가치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에 Goodwill은 이에 비하여 보다 객관적 가치의 기준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다.



**b. 초과 영업이익으로 본 권리금**

권리금 과 초과 이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Goodwill 의 형성과정을 설명해 본다. 일정한 사업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이 일반적으로 비슷한 업종의 평균수익률(Normal or Minimum Rate of Return)을 상회할 경우 사업주가 사업을 매도할 때 이 초과 이윤을 자산으로 환산하여 매도가격에 포함하게 되는데 이것을 Goodwill 이라고 한다. 이러한 Goodwill 은 과거 오랜 기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상황의 큰 변화가 없는 한 대체로 양자가 상호 신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숫자 적으로도 쉽게 계산 할 수 있게되어 있다.

계산방법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초과 이윤을 자본으로 환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총 매매 가격에서 영업 자산(상품, 비품, 시설 등등) 하나 하나의 시장 가치(Replacement Value)를 공제하고 도 차액이 있으면 이것은 초과 이윤 때문에 생기는 Goodwill로 보는 방법인데 오늘날 권리금의 계산방법은 이러한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총 매매 가격(부채 제외)에서 개 개 자산의 시장 가치를 공제함으로써 생기는 Goodwill 계산방법은 산만 하기는 하나 편리하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Goodwill 계산 방법은 정상이윤 (Opportunity Cost) 이나 초과이윤을 합리적인 공식에 적용하여 계산하는 수익 대 자본환원법(Earning Power Capitalization)이라 하겠다. 이제 이의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첫째로,** 기업의 역사적 실적(4-5년 정도)을 근거로 평균 이윤액을 계산하고,

**둘째로,** 순 유형자산 (총 자산-부채-무형자산)에다 최저 혹은 정상이윤율(Opportunity Cost)을 적용(곱하여)하여 정상 이윤액을 산정하고,

**셋째로,** 이렇게 계산된 정상 이윤액을, 본 기업의 평균 이윤에서 차감하면여기에서 이윤의 초과분이 생기며,

**넷째로,** 이 이윤의 초과분을 다시 자본 환산율로 나누어 주면 바로 Goodwill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과정을 간단한 공식으로 표시해 보면,

$$V = \frac{E}{C} \quad E = P - rA$$

P = 평균 이윤 기대치(과거 5년 간의 평균수익 실적을 근거로 한 미래의 수익)

A = 순 유형 고정자산

r = 정상 이윤율(투자자가 기대하는 최저 이상의 정상 이윤율-Opportunity Cost)

E = 이윤의 초과 분

C = 자본 환산율(Goodwill이 무형 자산이라는 점에서 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심한 경쟁 상황에서 초과 이윤이 무한정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본 환산율을 정상 이윤율 보다 2배정도 더 높게 책정 함).

**c. 투자자의 취업 효가 에서 본 권리금**

위에서 언급한 초과 이윤으로서의 권리금과는 달리, 특수 소수 민족(우리사회 포함)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권리금에는 투자자의 고용 내지 취업이라는 특수 여건을 고려해볼게 된다. 소규모 자영업으로 돈을 벌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번 돈은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으로 라기 보다는 투자라는 무대를 바탕으로, 투자가 자신의 성실한 노력의 대가로서 얻은 정상 수준 이상의 인건비 축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 때문에 이렇게 형성된 권리금은 매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선 취업기회의 보장이라는 제일 조건이 작용 하게된다. 다시 말 하면, 투자할 Business 가 실물 가치는 거의 없지만 그 Business가 영업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언어의 장애로 노동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초과수입 보다는 자기 고용이란 동기가 투자 결정을 제일 우선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d. 비 영업이익의 잠재 원으로 보는 권리금**

사업을 매 매 하는데는 현재의 영업수익, 영업조건 뿐만 아니라 장 차에 있을 수 있는 일회성(Non-Recurring) 영업 기회 나 영업 외적인 요인도 당연히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지금의 영업 실적은 보잘 것이 없으나 앞으로 주변 사정이 유리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투기 조성으로 인한 가수요는 제외) 그 사업의 매도 가격에는 많은 권리금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 생기는 권리금은 주로 Premium(웃돈, 내지 자리 값)이란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영업의 위치, 기타의 정보를 누가 먼저 발견, 취득하였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인 선취권 행사라는 개념으로 설명 될 수 있다.

**3. 권리금 산정의 구조적 문제점**

권리금의 산정은 주어진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팔고 시는 사람의 개인 사정이나 능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일관된 지표나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더욱이 한인들의 주어진 내외적 제약조건(소자본, 무경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언어 장애) 때문에 업종선택의 폭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업가치를 흥정할 때 권리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상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그에 상응하는 많은 위험 부담을 수반하게 되는 만큼 권리금 산정에 많은 조사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자산의 평가 기준이 획일적이지 못한 이중 경제가치 구조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일 예로, 흑인 지역에서 현금을 다(100%) 주고 구입한 부동산을 은행에서 감정 하게될 때에는 구입가격의 십분의 일도 평가 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지역의 비즈니스 나 부동산 가치는 일부 특정 부류의 사업가에게만 통용되는 극히 주관적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 Sarbanes-Oxley Act of 2002: 기업개혁법

박 홍석 (Ph.D & CPA, Cal Poly Pomona 교수) / 윤 식 ( CPA, Partner at Effectuare, LLP)

Enron과 WorldCom 사들의 회계부정 사건은 미 경제의 핵인 자본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는 회계 전문인을 중심으로 한 자율 규제 정책과 회계 감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게 되었고 결국에는 1933년 Security Act 이후 회계 영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법안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법안은 Sarbanes-Oxley Act of 2002로 일컬어지며, 그 목적은 미 증권법과 관련하여 회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증대 시키므로써 일반 투자자로부터 회계 자료에 대한 신임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2002년 7월 30일 미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한 이 법안은 모두 11장(Title)으로 되어 있으며,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SEC) 산하에 독립 기구인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설립과 그 역할, 최고 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에 의한 확인서(Certification) 제출,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의 책임확대, 감사인의 서비스 제한, 회계 감사의 독립성 강화, 상장회사의 회계자료와 관련된 책임, 회계자료의 일반 공개, 내부자 거래의 제한과 증권사기의 방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안은 주로 상장기업과 이를 감사하는 회계 법인에 대한 법안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안을 기타 회계 법인 및 전문 회계인을 규제하고 있는 주법과 전문 회계 단체들의 자율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져, 모든 공인회계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것이므로, 이 법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전문 회계인과 관련된 법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장회사를 감사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회계 법인은 이 법안에 의해 설립되는 회계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 회계법인은 회계감독위원회에 지난해에 감사를 한 상장회사들과 당해년도에 감사를 할 상장회사에 대한 내역, 즉 회사이름, 그들로부터 받은 감사비용, 감사외 받은 용역비등을 제출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최근 회계자료, 감사에 참여할 전문 회계인들에 대한 내역 및 회계 법인의 서비스 관리방침(Quality Control Policy)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등록을 회계감독위원회의 조직이 완성된 후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어 이 법안이 규정한 270일 안에 회계감독위원회의 조직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법안의 발효 이후 450일 안에 등록해야됨을 의미한다.

**2. 회계감독위원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회계감독위원회는 회계법인에 대해서 이 법안과 관련되는 추후 법안들은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행해야 하는데 회계법인이 백하나이상의 상장회사를 감사할 경우에는 매년 조사를 실행해야 하며 백개 이하의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3년안에 최소한 한번 조사를 실행해야 한다.

**3. 이 법안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조항이 있는데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회계법인이 감사를 실행하는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외에 행할 수 없는 8가지의 비 감사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해 금지된 8가지의 비 감사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 회계장부의 기록, 재무제표의 작성 서비스
- ♥ 재무정보시스템을 고안 또는 운영 서비스
- ♥ 자산가치를 측정, 평가 서비스
- ♥ 보험계리 서비스
- ♥ 내부감사 대행 서비스
- ♥ 기업의 운영 및 인사관리 서비스
- ♥ 유가증권의 중개 및 거래, 투자자문 서비스
- ♥ 법률 서비스, 감사와 관련이 없는 각종 전문 서비스

(2) 위의 8가지의 비 감사 서비스외의 서비스를 행할 시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받아야 하고, 비감사 서비스의 성격과 내용이 정기적으로 SEC에 제출되는 재무보고서에 공시되어야 한다.

(3) 감사를 총괄하는 파트너인 경우 같은 상장회사를 5년 이상 감사할 수 없으며, 최소한 5년마다 교체되어야 하고,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인이 1년 이내에 감사 대상기업의 경영진으로 재직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회계법인은 감사할 수 없다.

(4) 회계법인은 감사 대상회사의 주요 회계 정책 및 실행, 회사 경영진과 의논을 나누는 새로운 회계 상의 쟁점들과 감사인의 의견 등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들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5)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모두가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

지 않는 독립된 외부인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최소한 한 명이상이 재무 전문가여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정과 감사 수수료 승인 및 감사인과 경영진 사이에서 의견을 조정하는 중재역할을 한다.

(6) 기업 경영인은 감사위원회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4 증권사기에 대한 소송 소멸시효가 관련 혐의의 발견 후 1년에서 2년으로 그리고 실제 위법시점으로 부터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 또한 주요문서를 조작, 은폐 및 파괴하는 경우는 최고 20년 징역, 감사자료를 최소 5년동안 보관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한 징역은 10년, 증권사기에 대해서는 최고 25년의 형을 부과 할 수 있다.

5 증권거래법의 위반이나 증권사기와 연관되어 파산할 경우 일반 파산법으로부터 허용받는 채무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SEC의 독립기구인 회계감독위원회의 탄생과 활동에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며, 감사위원회와 외부이사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많은 회계부정으로 얼룩진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Sarbanes-Oxley법은 미국의 금융제도를 대 변화시키는 큰 바탕이 될 것이라고 본다.

First in Customer Satisfaction!

**SMILE,  
SIMPLICITY,  
SPEED,  
SINCERITY**

이 4S가 저희의 영업정신입니다.

오로지 고객을 위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일서은행**  
WILSHIRE STATE BANK Member FDIC  
www.wilshirebank.com





Lynn Kim, CPA

## 나의 직업은 공인노력사

**중** 중국속담에 '부모 잘 못 만나면, 반평생 고생하고, 배우자 잘 못 만나면, 한평생 고생한다'는 말이 있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표현이 성립될 수 있는지, 또 요즘 같은 속전속결시대에 배우자 잘못 만났다고 일년도 아니고, 한평생 씩이나고생하며, 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표현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한평생 고생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불의의 사고 혹은 예기치않던 병으로 졸지에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장애인에 관해서라면, 누구 아무개가 그렇게 되었다더라하는 정도로만 넘기고 살아간다. 약 3년전 실제로 그런일이 나 자신에게 닥치기 전까지도 나 역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남의 일이 내 가족중의 한 사람에게 일어났을때, 설상가상으로 그 가정의 wage earner인 가장에게 들이닥쳤을때 그 고통의 정도는 너무나 파괴적인 것이다.

별로 잘한 것도, 그렇다고 특별히 못할 짓도 별로 않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던 내게 polymyositis라는 -군이 번역하자면, 다발성근육염증 정도 되겠다- 난생 들도 보지도 못했던 병이 찾아 온것이다. 한마디로,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주지 않을 정도로 근육이 약해지는 병이다. 불과 몇달사이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증세는 악화되었다. 원인은 구구하지만, 그중 가장 설득력있는 단어는 스트레스성 이었다 그리고보니, 스트레스도 알려지 만큼이나 애매모호한 증세에 편리하게 사용되는 단골메뉴인 듯 싶다. 육체적인 병도 병이러니와 정신적인 고통은 몇 갑절 힘들게 만들었다. 막 국민학교 졸업을 앞둔 외동딸

아이가 자기 동기중 유일하게 말보로 스쿨에서 입학허가를 받았을때도 나는 제대로 축하조차 해 주지 못하는 아빠가 되어버렸다. 의사는 긴급처방을 하게되었고, 나는 그 독한 약들의 side effect로 인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어야했다. 곧 이어, 불면증에 시달리게되었고, 그 불면증을 치료하기위해 처방된 약의 설명서 밑에는 side effect로서, 잠이 안올 수도 있다는 마치 무슨 선문선답 같은 말도 붙어있었다. 투병생활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압박은 이미 예정된 순서였다. 별기는 힘들어도, 빠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나는 부자도 아니면서 투병생활을 3년씩이나 끝었으니, 정말 그보다 못할짓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때 간절히 생각나는 것이 바로 상해보험이었다. 당시 나는 California CPA협회를 통해 생명보험을 갖고 있었으나, 가끔 상해보험에 대한 안내책자가 오면 '내가 장애인 이 될일이 뭐가 있어...' 하고는 서슴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일이 생각났다. 너무나 후회스러웠다. 그래서, 흔히들 상해보험을 'Forgotten need'라 부르는 듯하다. 생명보험이 biological death에 대비하는 것이라면, 상해보험은 economic death에 대비하는 것이리라. 천만다행히도, 나는 한평생 고생하는 장애인이 되는 것은 면했지만,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 결코 강건너 불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물론, 적지않은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group plan등의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가입해 둘 것을 권하고 싶다. 물론, 그런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여 나 자신을 포함하여 여러사람 마음의 평화를 갖게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왕에 중국속담으로 시작했으니, 중국사람들이 쓰는 재미있는 표현하나 더 소개하겠다. 중국인들은 유명시계 브랜드인 Rolex를 한자로 노력사라고 표시한다. 노력이라는 단어 뒤에 선비 '사'자를 붙인 단어이다. 물론, 비슷한 발음을 나름대로 토착화시킨 단어가긴하겠지만, 이면에는 오랜세월을 항상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기위해 노력하는 명품의 자세를 반영시킨듯하다. 꿈보다 해몽일지 몰라도 중국인들의 기질을 엿보는 듯 느껴졌다.

나는 아프고 난 후로부터 가끔 남들이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나는 내 직업은 노력사라고 농담스럽게 대답한다. 물론, 사람마다 소위 먹고 살기위한 표면적인 직업이 따로 있긴하겠지만, 항상 노력하고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력사라는 직업이 있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왕이면, 앞에 공인이란 단어까지 붙여공인노력사라면 어떨까. 물론 그런 직업은 아직 없을 것이다. 아니 확실히 없다. 왜냐하면, 공인노력사라는 단어를 MS Word에 넣다보면 빨간 지령이 표시가 단어 밑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 그렇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균형을 유지하며 나름대로 노력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Rolex와 같은 '명품인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에 더해 공인노력사라는 타이틀까지 곁들인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해본다.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홈페이지(www.kacpa.org)를 이번 에 새롭게 개편하였다. 지난 1999년에 처음 만들어져 협회를 알리는 정도의 기능에 머물렀던 홈페이지를 대폭 수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개선, 추가하여 더욱 짜임새 있고 알차게 만들어졌다.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친근하게 접근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새롭게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다음 세 가지 목적에 최대한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남가주 한인사회에 대한 봉사.  
영문으로만 되어있던 메뉴에 한글을 추가하였다. 또한 논



마틴 박 CPA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홈페이지(www.kacpa.org)

에 잘 뛰는 곳에 질문과 응답코너를 만들어 날로 복잡해지는 세법, 회계, 경영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도록 하였다.

- 여러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사업기회제공.  
명함은 물론이고 광고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또는 이메일주소 하나쯤 놓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인상을 주는 요즘이다. 이번 홈페이지는 여러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에게 또 다른 사업 환경과 기회 제공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남가주 한인사회와 친숙한 은행, 팩토링, 보험, 투자회사 등 여러 금융관련업체들이 모두 한곳에 망라되어 일반인들이 각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정보를 쉽게 얻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협회회원들의 구심점 역할.  
업무관련 정보나 지식의 교환 및 회원간의 연락망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협회관련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회원간의 의견교환도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 1999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협회지인 CPA Journal과 협회에서 주관하는 월례 세미나자료도 올려놓아서 회원들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회계, 세무, 경영컨설팅관련 홈페이지들의 주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놓아서 쉽게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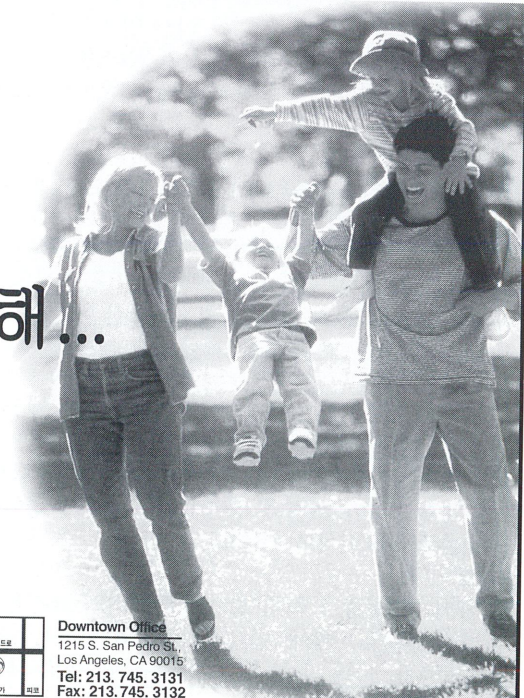
협회에서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의 애정 어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려 하고 있다.




# 준비하세요, 풍요로운 행복과 꿈을위해...

여러분의 미래를위해 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분 한분 행복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  
미래은행은 항상 고객님의 마음과 함께하겠습니다.

## 당신의 미래를 미래은행과 함께...





www.miraebank.com 미래은행

**Main Office**  
21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427. 8800  
Fax: 213. 427. 8899

**Downtown Office**  
1215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745. 3131  
Fax: 213. 745. 3132



하여 택할 수 있는 파산 방법이다. 이 챗터13의 특징으로  
는 개인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벌  
어들일 수입에서 3-5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있  
다는 점이다. 채무 변제액은 채무자의 수입능력에 따라  
전체 채무액의 10%에서 100%까지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챗터7에서 청산되지 않는 채무도 챗터13에서는 청산될  
수 있고, 부동산의 차압이나 동산의 압류도 연체된 지불  
금을 파산 신청의 지불 방법에 따라 다시 변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파산과 개정된 파산법에 관하여

한 태호 변호사

### 1. 파산이란 무엇인가?

파산은 연방 파산법에 규정된 관련 챗터의 명칭에 따라  
분류되어 불리어 지는데 그 중 대표적인 챗터7, 챗터11,  
챗터13 등을 예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

#### 1) 챗터7

우선 챗터7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산 방법  
으로서,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공제 받지 못하는 모든 재  
산은 유질 처분되어 우선 순위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방법이다. 챗터7은 개인, 부부,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십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파산 방법이며, 주로 개인  
인 경우, 4-6개월이면 파산 절차가 끝나게 된다. 파산 신  
청 후 벌어들인 수입이나 임금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청구  
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 2) 챗터11

챗터11은 구조 재조정, 또는 채무 지불 연기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파산 형태로서, 주로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또  
는 챗터13의 부채 한계를 초과한 개인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 챗터11의 경우, 채무자는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사  
업체도 종전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챗  
터 11의 경우, 구조 재조정 계획서를 파산법원에 제출하  
여야 하고,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 파산법원이 그 내용  
을 확정, 승인해 주어야만 이 계획서에 따라 양측에 구속  
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구조 재조정 계획  
서는 장래에 발생하는 수입, 기타 재산의 매각처분, 또는  
회사의 합병이나 재출자, 증자 등을 통해서 채무를 변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3) 챗터13

챗터13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  
고 있다. 우선, 고정 수입이 있는 개인으로서, 무담보 채  
무 \$269,250 이하, 담보 채무 \$807,750 이하인 경우에 한

### 2. 어떠한 경우 파산을 신청하는가?

과연,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파산이외에 다른 방법  
은 없는가 살펴보고, 어떤 형태의 파산 방법이 자신에게  
제일 적당한가, 어떤 채무가 청산되고, 또 청산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수입과 비교하여, 채무 변제에 필요한  
매달 페이먼트를 제외한 실제 소요되는 최저 생활비를 계  
산하면, 그 차액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금  
액이 된다. 그 금액으로 앞으로 약 3년 이내에 현존하는  
채무를 다 갚을 수 있다면 파산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소비자 신용상담회사 (CONSUMER  
CREDIT COUNSELORS)를 통해 페이먼트 재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무런 재산도 없는 경우, 또는 모든 소유 재  
산이 합법적으로 채권자로부터 공제된 경우는 일부러 파  
산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 3. 청산되지 않는 채무는 어떤 것이 있는가?

파산 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다음과 같  
다.

- 1) 세금(종업원 페이롤, 인컴택스, 세일즈 택스)
- 2) 자녀 양육비
- 3) 학비 융자금
- 4) 취중운전으로 인해 선고 받은 배상금
- 5) 형사법에 의한 벌금
- 6) 사기나 의도적 위법행위로 인해 선고받은 배상금.
- 7) 크레딧 카드 신청시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 8) 크레딧 카드를 갚지 않을 의도를 지니고 사용했을 경우.

### 4. 강력해진 새로운 파산법안 의회 통과

지난 2월에 하원을 통과한 강화된 파산법안에 이어, 지난  
3월 15일 거의 동일한 파산법 개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  
하였다. 미국의 양원제도에 따라 동일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여야만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  
하게 되므로, 이제 남은 과정은, 상,하원이 통일 조정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과정만 남은 셈이다. 이 새



로운 파산법은 크레딧 카드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강력한 로비 활동에 따라 근 20년 만에 획기적인 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에는 년 평균 약 700,000 건의 파산 신청이 있었으나, 지난 2000년도에는 1,200,000 건 이상이 신청되었다. 파산 조건이 강화된 새로운 법안이 통과 되기 전에 미리 파산신청을 하려고 많은 채무자들이 서둘러 파산 신청을 한 결과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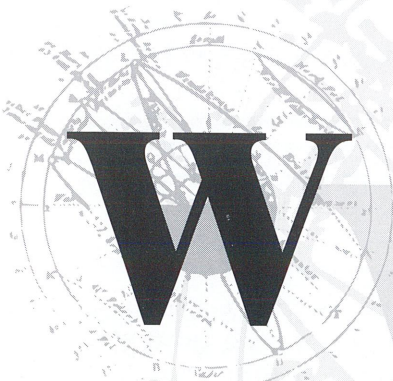
**5. 새로운 법안의 주요 변경된 내용**

- 1) 파산 신청자의 신청의도가 재정적인 어려움 이외에 목적을 둔 경우 이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30일 간의 "COOLING OFF" (유예기간)을 설정: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접수하고 난후,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파산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와 새로운 합의를 하여 파산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파산 신청자의 채무 청산요건을 강화하고, 또한 채권자의 이의 신청 요건을 몇 가지 더 첨가시켰다.
- 4)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수입 하한선을 두 배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 5) 그 외에도 절차상의 여러 가지 변경된 조항이 있는데, 주로 비용 절감과 소규모 채권자의 입장을 강화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6) 주택소유자의 공제 상한액을 각 주의 규정에 상관없이 \$125,000로 통일하고 있다.
- 7) 따라서, 결과적으로 일정한 수입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종래에는 모두 청산되던 채무가 새로운 파산법이 적용될 경우, 이제는 파산 이후에도 일정한 한도까지 갚아야 하게 되는 것이다.

**별첨1: 파산 신청 공제 항목 및 한도액**

**파산신청 공제 항목 및 한도액**

| 공제 항목                | CA LIST 형<br>(CCP 703.140)  | FEDERAL LIST 형<br>(CCP 704.101 - 704.730) | 비고                     |
|----------------------|---|---|------------------------|
| 주택 홈스테드              | 독산: \$50,000<br>부부공동: \$75,000<br>65세 이상 부부(65세 이상 불구자 부부): \$125,000 | 공제 항목에 관계없이 총액 \$15,000 까지 공제 받음.         | 홈스테드 신청 하지 않았어도 가능.    |
| 자동차                  | \$1,900   | \$2,400                                   | 한대에 한함.                |
| 가구, 가정용품, 의복류, 개인용품. | 채무자 및 가족이 통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에 한함.<br>(값비싼 물건은 제외)                        | 채무자 및 가족이 통상적으로 생활에 물품 중 각 품목 당 \$400이하   |                        |
| 보석, 예술품              | 총액 \$5,000 까지   | 총액 \$1,000 까지                             |                        |
| 생업을 위한 연장, 도구, 장비 등. | 개인당 \$5,000 부부합계 \$10,000 까지  | 합계 \$1,500 까지                             |                        |
| 생명보험                 | \$8,000 까지  | \$8,000 까지                                | 저축성이 아닌 생명보험은 해당 안됨.   |
| 공공 은퇴연금 및 개인 은퇴연금    | 공제  | 공제  | 자영업자인 경우 일정한 제한규정이 있음. |
| 부상에 대한 보상금           | 본인 및 가족 생활비에 필요한 적정한 금액   | \$15,000까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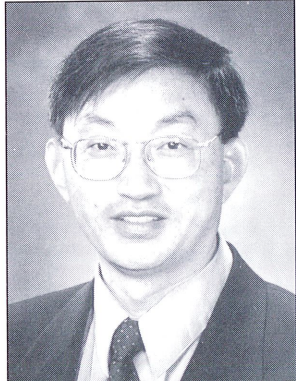
# W 일셔국제대학

전 석호 공인회계사

Tel: (213) 705-0550

**Wilshire International University**  
3435 Wilshire Blvd. # 2820 Los Angeles, CA 90010





Yoon H. Kim, CPA

## Enron 사태와 공인 회계사의 위치

지난 1년 간 일반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언론의 보도 대상이 된 것이 Enron 사건임은 다 아는 바이다. Enron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 임원은 물론 이에 관여한 공인 회계사, 변호사 등도 처벌,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한인 공인 회계사가 보는 시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Enron 사태의 진상

Enron 사태는 회사내부에서 주도한 회계처리의 잘못을 CPA가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고 더구나 정부의 조사가 압박하자 CPA가 증빙 서류를 절삭(Shredding) 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Enron 은 2000 년 8월까지만 해도 주가가 \$91로 최고의 시세를 보였던 회사였다. Enron 성장의 근원은 Enron Online Division 이었고 이에 대한 Financing 이 필요했다. 이에 대한 Enron 은 SPEs(special purpose entities)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Enron 은 SPEs 에 대하여 GAAP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선별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제표에서 누락 시켰다. 또한 Gain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자산을 SPEs 에 매각하였다. 또한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피하기 위하여 소유권 비율 등을 조작 시켰다.

2001년 10월 16 일 Enron 은 첫 번째 손실을 발표했고 주주 지분의 1.2 billion 감축을 발표했다. 2001년 10월 17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2001 년 11 월 8일 수익(Income) 과대계상 금액이 1997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600 million 이라고 발표하였다. 2001년 12 월 2일 Enron 은 파산 신청을 하였다.

### (2) Arther Andersen 의 역할과 제기된 Issue 들

Arther Andersen 은 Enron 의 외부감사인임과 동시에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 하였다. Enron 에 대한 회계감사 수수료가 25million 이었고 경영 자문료가 \$27 million 이었다. Andersen 은 내부적으로 Enron 회계감사의 risk를 의논하였지만 회계감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잘못된 회계감사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더구나 서류절삭으로 증거를 없애는 시도를 하였다. 결국 Andersen 은 회계감사를 하지 못하는 강한 처벌을 받았고 그 존재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issue가 제기 되었다.

#### ①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문제

회계감사인이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경우 독립성이 유지되느냐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Enron 의 경우 경영자문 수수료가 회계감사비용보다 많기 때문에 독립성 유지에 문제가 되었다. 독립성 문제에 대한 세 가지 대체 안은 User pays alternative(감사보고서 사용자가 비용부담), Pooled funds alternative(SEC 가 auditor를 hire 하는 방법), Government auditors alternative(정부주도 감사)이다.

또한 Non-audit service를 감사인이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많은 회계법인이 감사와

경영자문 회사를 분리하고 있다.

독립성 유지의 방법으로 수년마다 감사인을 순환(rotate)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는 이미 오래 전 한국에서 시행했던 방법인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다른 issue 는 revolving door controversy 인데 감사인의 고객회사에의 임직원 취업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끝으로 Conflicts of interest 문제가 있다. 감사인과 고객 사이에 주식 보유 등으로 conflict 이 있을 경우 독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를 좀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② 회계기준(GAAP) 의 강화와 명료화

GAAP가 좀더 원칙기준 (Principle-Based Standards)으로 바뀌어야 하며, 정치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하며, 공시( disclosures)를 강화해야 하며, 회계기준이 부정(fraud) 발견과도 연결이 되어야 하며, 중요성(materiality)의 원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③ 감사인에 대한 감독과 규제의 강화

업계단체,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SEC) 가 정해놓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감사인의 감독과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하기 위한 system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④Peer Review 와 Continuing Education**

감사인의 자격 강화를 위하여 peer review 가 강제화 되고 continuing education 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③Enron 사태와 공인 회계사의 자세**

Enron 사태의 결과로 SEC 내에 accounting oversight board 의 설치와 회계조작 임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 국민들의 시각에는 Enron/Andersen 사태로 인하여 감사인에 대한 신뢰도가 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Enron 사건은 Accounting Profession 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그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독립성, 경영자문 서비스 분리, 회계 기준의 강화, 개선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인 자체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기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필자는 이미 25년전 한국에서 회계감사를 담당했을 때 감사인의 3-4년 강제 순환 제도의 장점을 파악하였다. 그 당시 한국 CPA 들은 왜 미국의 자유 계약제도를 도입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곤 했다. Enron 사태를 보면서 오늘날 미국에서 3-4년 강제 순환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

자유경쟁 감사제도가 반드시 좋은지는 의문시된다.

한인 CPA 업계는 업무 비중이 감사보다는 회계, 세무 위주로 되어있어 Enron 사태의 영향을 적게 받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Enron 사태는 공인 회계사 전체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며 이를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 개선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Accounting Profession 도 다른 Profession 과 마찬가지로 Practice를 tight 하게 control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Tight control 의 요소는 독립성 유지, GAAP, GAAS 준수, 윤리 규정 준수 등이다. Tight control 이 이루어져야만 Accounting Profession 으로서의 자부심도 커지고 외부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남다른 성장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 프라이姆 금융은 미국내 3대 주요 팩토링 회사와 신용 보증 업무 제휴를 통해 최대의 크레딧 승인율 (Credit Approval)을 보장합니다.



■ 비즈니스 금융의 생명은 빠른 일처리에 있습니다. 친절함 직원들의 빠르고 편한 금융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철저한 자산 관리 및 고객 관리를 유지함으로써 건실하고 안정된 우량 금융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지켜 갑니다.

**팩토링, 무역금융, P.O. 파이낸스에서 항상 앞서갑니다.**

■ 새주소: 1055 West 7th Street #2200, L.A., CA 90017



Tel: 213•488•6400





www.centerbank.com

# 비즈니스, 시간은 돈입니다.



신속한 융자 결정,  
 일반대출 및 SBA용자.  
 매일 아침 Statement를  
 사무실에서 편안히 받아보실 수 있는  
 팩스뱅킹 서비스.  
 무역금융과 무역업무를  
 올림픽과 다운타운 두 곳에서 처리하는  
 국제부 서비스까지.  
 비즈니스 고객께서  
 중앙은행을 찾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앙은행장 김 선 흥

비즈니스용자

SBA용자

무역금융/업무

팩스뱅킹



**중앙은행**  
**CENTER BANK**

**2002** 고객의 시간은 돈입니다  
 2002년 중앙은행 캠페인

|                        |                          |                                  |                         |                          |                         |                         |                         |                        |                         |
|------------------------|--------------------------|----------------------------------|-------------------------|--------------------------|-------------------------|-------------------------|-------------------------|------------------------|-------------------------|
| 본점<br>213-251-2222     | 옥스포드 지점<br>213-388-2222  | 웹서 지점<br>213-251-2222            | 샌페드로 지점<br>213-741-2222 | 토렌스 지점<br>310-891-2222   | 세리토스 지점<br>562-403-2222 | 샌디에고 지점<br>858-874-3333 | 올림픽 지점<br>213-386-2222  | 국제부<br>213-427-2222    | 다운타운 지점<br>213-746-2222 |
| 웨스턴 지점<br>213-381-2222 | SBA Dept<br>213-381-2222 | Auto Loan Center<br>213-381-2222 | 가디너 지점<br>310-327-2222  | 가든그로브 지점<br>714-891-2222 | 인랜드 지점<br>909-370-2222  | 피닉스 LPO<br>480-421-0868 | 시애틀 LPO<br>425-775-5555 | 덴버 LPO<br>303-751-1717 | 워싱턴 LPO<br>703-941-3111 |



20세기는 '미국의세기'였고, 특히 마지막 10년간 미국은 세계경제의 오아시스요, 성장 기관차였다. 이러한 미국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9.11 테러이후에는 세계 공업제품의 최종 수요처이며, 세계의 자금이 모여드는 곳으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진 듯싶다. 물론 미국은 앞으로도 이념, 제도 등의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세계 리더십은, 특히 정신적 지도력은 전쟁을 통한 무력의 지배와 생산보다는 소모의 경제 패턴으로 이제 한계에 달한 듯하다. 실상가상으로 미국은 국민들간의 빈부의 격차가 너무 확대되어, 중산층의 붕괴와 삶의 질이 하락하고 정치는 재력이 지배하는 금권 정치로써 세계경제에 헤게모니를 잃어 가고 있다. 20세기의 세계 경제는 5번의 크디란 물결 속에 진입해 있다. 이것을 차례로 나누어보자. 첫째는, 1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1930년대 중반까지로, 유럽 열강이 상호 경쟁을 하면서 서서히 힘을 잃어간 시기였다. 1차 대전은 전통적 강국 영국, 프랑스에 신흥 강국 독일이 도전한 전쟁이었으나 양쪽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세계 열강으로써 힘을 잃어 가는 미국의 성장기이다. 둘째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부터 1970년까지로 이때는 미

그럼자로 9.11 테러로 폭발했다. 다가올 다섯 번째는 몇 개의 경제권 역이 공존하면서 세계 경제를 공동 운영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우위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우위는 상대적인 의미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5단계의 경제변화 중에, 우리는 현재 동양권 이민자들로 미국속에 독특한 경제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아시아도 잠재적인 거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국의 경제적인 발전은 미국속의 이중언어 민족에게 모국인을 위한 서비스소비지역화와 제조업 및 아시아국가들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자금의 흐름도 일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



강신용 CPA

계로 분산될 것이다. 미국내의 동양인은 이 같은 동양권의 발전으로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고, 진정한 세계화로 가는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때 비즈니스맨으로써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키아벨리

즘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마키아벨리는 15세기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동양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했던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다. 마키아벨리를 권모술수의 화신이라고 여긴다. 권모술수란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목적이란 경제적 부이거나 또는 권력을 달성하려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변화에 대한 준비-라는 것이다. 모든 조직은 움직여야만 한다. 정지된 것은 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변화에 대한 개념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정치가, 경제인이라는 것이다. 기업인으로써 가장 대비되는 예는 얼음 공장과 GE의 냉장고이다. 1900대초 미국의 상사회사중의 어떤 얼음(빙수)공장은 초우량 기업이었다. 이들은 그 당시 GE가 발명한 소금을 사용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빙수기(냉장고 시초)를 보고 코웃음을 쳤지만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GE가 얼마나 위대한 회사로 성장했는지 보라. 또한 변화에 잘 대처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삼성을 보라. 3백 산업-백설당, 흰옷, 조미료-에서 세계적인 첨단회사-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로 발전되어 의식주 산업에서 하이테크로 변화된 것이 생존과 성장의 비결이었다. 우리는 4개월 전에 세계 월드컵 4강 신화를 통해 얼마나 열광했는가! 모든 운동경기도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싸움에는 어떤 형태이든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감독의 능력이 승부를 좌우하는 것은 보고 또 보았다.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인 사업가들은 변화할 준비를 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양권에서 잠재력이 무궁한 중국은 엄청난 제조업의 발전으로 우리를 밀어치고, 과거의 일본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를 몰아치고 있다. 둘째, 이민 1세대들은 점차 현장에서 물러 나오며 준비되지 않은 2세들에게 맞길 수가 없다. 배고픈 인내심과 근면한 농사꾼의 기질을 2세들에게 대물림하지 못했다. 셋째, 이제는 과거의 업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한다. 우리의 후손들이 미국에서 성장하기 위해, 단순 노동적 일감에서 점차 지식산업에 인적, 물질 투자를 하면 할수록 삶의 질을 유지하고, 보다 건전한 중산층으로 존재할 수 있다. 우리에게 타산지적인 유태인의 세대간 변화도 우리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이견희 삼성회장께서 말한- Wife만 빼고 모두 바뀐야 산다-는 사업가의 능동적인 변화의식이 필요한 때다.

## 21세기 세계 경제속의 마키아벨리와 KOREAN BUSINESSMAN

국의 독주시대였다. 큰 타격 없이 2차대전의 터널을 지나 온 미국은 전쟁후 유럽, 일본의 재건 지원과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GATT(관세, 무역일반협정)체제를 통해 세계 질서를 주도했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 경제가 재건되면서 미국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을 수 없었다. 베트남 전쟁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했고 무역적자는 늘어만 갔다. 결국 1971년 닉슨독트린으로 미국의 달리는 금태환을 중지함으로써 미국 독주시대는 막을 내렸다.

셋째는 월남전 이후부터 1991년까지로 미국, 유럽과일본 중심의 동아시아가 공존한 시기였다. 실제로 닉슨독트린 세계 경제에 대한 유럽과 일본의 공동 책임을 요구한 것이었다. 석유 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일본의 공업생산력은 자동차, 전자제품을 통해 미국과 유럽을 위협하는 세계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때 일본 기업의 성장은 쓰러지는 미국의 부동산을 뉴욕에서, 로스 엔젤레스에서 사들이는 동안 미국은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변화는 금융기관의 통합 또는 도산으로 건전한 자산운영의 기본을 이루었다. 반면 유럽은 착실히 통합의 길을 따라 유럽을 하나의 국가로 제도와 문화로 인식하려 노력했다. 이렇게 효율적인 경제적 구조조정을 이루어갔다. 일본의 눈부신 발전에 미국과 유럽은 플라자합의로 엔고(高)를 만들어내면서 일본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려 미국과 유럽이 다시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넷째는, 1992년 일본의 자산 버블 붕괴로 시작된다. 이 시기는 IT(정보기술) 혁명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신경제의 시대였다. 미국은 1980년대 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을 정비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했다. 옛 소련 체제의 붕괴로 미국은 자원을 보다 생산성이 높은 경제분야로 돌릴 수 있었다. 미국은 세계화와 개방으로 특징되는 UR협상을 주도적으로 마무리지었고 동유럽을 세계 시장으로 유인했다. 그러나 세계화는 중국같이 잠재력 있는 국가의 성장을 도왔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엔 치명적이었다. 미국의 앞마당이라는 중남미 국가들은 세계화의 부작용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했고 그들은 미국의 경제적 속국처럼 자신들의 자원이 세계화에 따라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중동의 여러 나라는 국민 소득 수준이 20년이나 후퇴하여 70년대 이전보다 악화됐으며 이것은 세계화의 어두운



Member FDIC • A Full Service Bank



### 가족처럼 편안하게 모시는 조흥은행

캘리포니아 조흥은행은 언제나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다

- ❖ 예금거래: Checking, Savings, CD, MMA, Safe Deposit Box
- ❖ 대출거래: SBA대출, 상업 대출, 부동산대출, 자동차대출, 무역금융대출
- ❖ 수출입거래: 신용장개설, 매입, 통지, D/A·D/P
- ❖ 송금거래: 미국 / 한국 포함 전 세계 모든 지역 송금
- ❖ 신용카드: Credit Card 발급, 가맹점(Merchant Processing)서비스

**CHB CALIFORNIA  
CHOHUNG BANK**

30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www.cchbla.com](http://www.cchbla.com) / Tel:(213)380-8300 / Fax:(213)386-2170



20세기는 '미국의세기'였고 특히 마지막 10년간 미국은 세계경제의 오아시스요, 성장 기관차였다. 이러한 미국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9.11 테러이후에는 세계 공업제품의 최종 수요처이며, 세계의 자금이 모여드는 곳으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진 듯싶다. 물론 미국은 앞으로도 이념, 제도 등의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세계 리더십은, 특히 정신적 지도력은 전쟁을 통한 무력의 지배와 생산보다는 소모의 경제 패턴으로 이제 한계에 달한 듯하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국민들간의 빈부의 격차가 너무 확대되어, 중산층의 붕괴와 삶의 질이 하락하고 정치는 재력이 지배하는 금권 정치로써 세계경제에 헤게모니를 잃어 가고 있다. 20세기의 세계 경제는 5번의 크다란 물결 속에 진입해 있다. 이것을 차례로 나누어보자. 첫째는, 1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1930년대 중반까지로, 유럽 열강이 상호 경쟁을 하면서 서서히 힘을 잃어간 시기였다. 1차 대전은 전통적 강국 영국, 프랑스에 신흥 강국 독일이 도전한 전쟁이었으나 양쪽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세계 열강으로써 힘을 잃어 가는 미국의 성장기이다. 둘째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부터 1970년까지로 이때는 미

그림자로, 9.11 테러로 폭발했다. 다가올 다섯 번째는 몇 개의 경제권 역이 공존하면서 세계 경제를 공동 운영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우위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우위는 상대적인 의미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5단계의 경제변화 중에, 우리는 현재 동양권 이민자들로 미국속에 독특한 경제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아시아도 잠재적인 거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적 발전은 미국속의 이중언어 민



강신용 CPA

족에게 모국인을 위한 서비스소비지역화와 제조업 및 아시아국가들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자금의 흐름도 일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로 분산될 것이다. 미국내의 동양인은 이 같은 동양권의 발전으로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고, 진정한 세계화로 가는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때 비즈니스맨으로써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키아벨리

## 21세기 세계 경제속의 마키아벨리와 KOREAN BUSINESSMAN

국의 독주시대였다. 큰 타격 없이 2차대전의 터널을 지나온 미국은 전쟁후 유럽, 일본의 재건 지원과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GATT(관세, 무역일반협정)체제를 통해 세계 질서를 주도했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 경제가 재건되면서 미국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을 수 없었다. 베트남 전쟁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했고 무역적자는 늘어만 갔다. 결국 1971년 닉슨독트린으로 미국의 달러는 금테환을 중지함으로써 미국 독주시대는 막을 내렸다.

셋째는 월남전 이후부터 1991년까지로 미국, 유럽과일본 중심의 동아시아가 공존한 시기였다. 실제로 닉슨독트린 세계 경제에 대한 유럽과 일본의 공동 책임을 요구한 것이었다. 석유 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일본의 공업생산력은 자동차, 전자제품을 통해 미국과 유럽을 위협하는 세계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때 일본 기업의 성장은 쓰러지는 미국의 부동산을 뉴욕에서, 로스 엔젤레스에서 사들이는 동안 미국은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변화는 금융기관의 통합 또는 도산으로 전전한 자산운영의 기본을 이루었다. 반면 유럽은 착실히 통합의 길을 따라 유럽을 하나의 국가로 제도와 문화로 인식하려 노력했다. 이렇게 효율적인 경제적 구조조정을 이루어갔다. 일본의 눈부신 발전에 미국과 유럽은 플라자합의로 엔고(高)를 만들어내면서 일본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려 미국과 유럽이 다시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넷째는, 1992년 일본의 자산 버블 붕괴로 시작된다. 이 시기는 IT(정보기술) 혁명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신경제의 시대였다. 미국은 1980년대 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을 정비하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했다. 옛 소련 체제의 붕괴로 미국은 자원을 보다 생산성이 높은 경제분야로 돌릴 수 있었다. 미국은 세계화와 개방으로 특징되는 UR협상을 주도적으로 마무리지었고 동유럽을 세계 시장으로 유인했다. 그러나 세계화는 중국같이 잠재력 있는 국가의 성장을 도왔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엔 치명적이었다. 미국의 앞마당이라는 중남미 국가들은 세계화의 부작용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했고 그들은 미국의 경제적 속국처럼 자신들의 자원이 세계화에 따라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중동의 여러 나라는 국민 소득 수준이 20년이나 후퇴하여 70년대 이전보다 악화됐으며 이것은 세계화의 어두운

점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마키아벨리는 15세기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동양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했던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다. 마키아벨리를 권모술수의 화신이라고 여긴다. 권모술수란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목적이란 경제적 부이거나 또는 권력을 달성하려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변화에 대한 준비-라는 것이다. 모든 조직은 움직여야만 한다. 정지된 것은 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변화에 대한 개념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정치가, 경제인이라는 것이다. 기업인으로써 가장 대비되는 예는 얼음 공장 GE의 냉장고이다. 1900대초 미국의 상강회사중의 어떤 얼음(빙수)공장은 초우량 기업이었다. 이들은 그 당시 GE가 발명한 소금을 사용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빙수기(냉장고 시초)를 보고 코웃음 쳤지만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GE가 얼마나 위대한 회사로 성장했는지 보라. 또한 변화에 잘 대처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삼성을 보라. 3백 산업-백설당, 흰옷, 조미료-에서 세계적인 첨단회사-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로 발전되어 의식주 산업에서 하이테크로 변화된 것이 생존과 성장의 비결이었다. 우리는 4개월 전에 세계 월드컵 4강 신화를 통해 얼마나 열광했는가! 모든 운동경기도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싸움에는 어떤 형태이든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감독의 능력이 승부를 좌우하는 것은 보고 또 보았다.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인 사업가들은 변화할 준비를 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양권에서 잠재력이 무궁한 중국은 엄청난 제조업의 발전으로 우리를 밀어치고, 과거의 일본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를 몰아치고 있다. 둘째, 이민 1세들은 점차 현장에서 물러 나오며 준비되지 않은 2세들에게 맞길 수가 없다. 배고픈 인내심과 근면한 농사꾼의 기질을 2세들에게 대물림하지 못했다. 셋째, 이제는 과거의 업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한다. 우리의 후손들이 미국에서 성장하기 위해, 단순 노동적 일감에서 점차 지식산업에 인적, 물질 투자를 하면 할수록 삶의 질을 유지하고, 보다 진정한 중산층으로 존재할 수 있다. 우리에게 타산지적인 유태인의 세대간 변화도 우리의 지침이 될 수 있다. 이견희 삼성회장께서 말한- Wife만 빼고 모두 바꿔야 산다-는 사업가의 능동적인 변화의식이 필요한 때다.



Member FDIC • A Full Service Bank



### 가족처럼 편안하게 모시는 조흥은행

캘리포니아 조흥은행은 언제나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다

- ❖ 예금거래: Checking, Savings, CD, MMA, Safe Deposit Box
- ❖ 대출거래: SBA대출, 상업대출, 부동산대출, 자동차대출, 무역금융대출
- ❖ 수출입거래: 신용장 개설, 매입, 통지, D/A·D/P
- ❖ 송금거래: 미국 / 한국 포함 전 세계 모든 지역 송금
- ❖ 신용카드: Credit Card 발급, 가맹점(Merchant Processing)서비스

**CHB CALIFORNIA  
CHOHUNG BANK**

30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www.cchbla.com](http://www.cchbla.com) / Tel:(213)380-8300 / Fax:(213)386-2170



**A 주택 소유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

1.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되는 렌트 비용=68만5천 달러
2. 30년후 용자 완불시 생기는 주택 에퀴티= 20만 달러
3. 집값 상승 (년 6% Annual Compounding)= \$1백18만 6천 달러
4. 세금 공제 혜택 (30% 세율)=7만6천 달러  
**30년간 총 이익=2백14만7천 달러**

**B 주택 소유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

1. 총 페이먼트 (용자, 재산세, 보험 포함)=57만6천 달러
2. 다운 페이먼트와 클로징 코스트를 다른 곳에 투자할 경우의 기회 비용 (6%/yr monthly compounding)=28만6천 달러
3. 클로징 비용=7천 달러  
**30년간 총 손실=86만9천 달러**

계산 결과 주택 매입과 소유로 발생하는 이익은 향후 30년간 총 1백27만8천 달러로 환산됐다. 이를 월 별로 나눠 보면 한 달에 3천5백50 달러의 이익이 나오는 셈이다.

30년 간 총 이익 1백27만 8천 달러를 연 6%로 Discount 해 보면, Present Value로 21만2천 달러의 이익이 발생한다. 25만 달러의 집을 소유하는데 드는 true costs는 3만8천 달러라는 의미다 (\$250,000 - \$212,000).

눈에 띄는 대목은 소득세 공제 혜택이 전체적인 경제 혜택에 비해 불과 2.7%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집을 사는 가장 큰 이유를 물었을 때 대표적인 모범 답안이 바로 소득세 공제 혜택이지만, 막상 계산을 해 보면 다른 부문에서 생기는 이익에 비해 소득세 공제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임을 알 수있다. 물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공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혜택인 것은 사실이다.

주택 시세 상승률이 비교적 큰 지역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커진다. 위에서 예상한대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연 6%가 아니라 연 8%로 가정했을 때 이익은 두 배로 뛰어 오른다. 또한 Purchase Price를 \$350,000로 올려서 계산해도 이해득실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집값이 비싼 만큼 집값 상승 폭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새롭게 거듭난 주식의 투자 포텐셜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증권투자에서 입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소비자들은 또 다시 부동산 버블로 피해를 입음지도 모른다. 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순수한 동기에서의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겐 위에서 피력한 경제적 분석 두가지가 마음의 결정에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행복한 미래의 꿈이 있는 곳

**새한은행**

Visit us at [www.saeahnbank.com](http://www.saeahnbank.com)

전인자금융서비스 1-877-408-6018

함께 쌓아온 믿음, 함께 열어갈 세상-

**새한은행**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건실한 은행으로 성장하고 있는 새한은행이 동포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다양한 적금, 각종 용자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일주의로 고객의 편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내실 있는 은행 - 새한은행

→ 미래형 카드 : 미전역 무료 비행기 티켓 제공  
 미래형 카드 만드시는 분께 1000일 Free 제공  
 18000마일 이상일시 \$350 상당의  
 미국내 무료 비행기 티켓 제공 (\$1당 1마일 기준)

■ FAX뱅킹서비스

Corporate Office 3580 Wilshire Blvd. #1500 Los Angeles, CA 90010 (213) 388-5550  
 Western Office 55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213) 389-5550  
 Downtown Office 1100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5 (213) 745-5550  
 Fullerton Office 454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 523-5550  
 La Crescenta Office 2754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618) 965-3650

Wilshire Office 3580 Wilshire Blvd. #120 Los Angeles, CA 90010 (213) 388-5550  
 Rowland Heights Office 1736 S. Nogales St. R.H., CA 91748 (626) 965-3650  
 SBA Department 3580 Wilshire Blvd. #1500 Los Angeles, CA 90010 (213) 388-5550  
 International Department 55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213) 389-5550  
 Saeahn Tellerbanking Service (213) 383-8200





김 재원 MetaCom

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서류를 준비하는데 편리할 뿐 아니라 고객에 대한 용자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관하게 된다. 또한 CPA로부터 은행에 가는 제반구비서류들을 고객을 통하지 않고 CPA가 은행에 직접 제출함으로써 고객은 많은 시간절감을 할 수 있고 CPA와 은행은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 은행의 입장에서 여러 CPA들로부터 받는 Data를 은행의 취향에 따라 용자 심사 부서를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은행의 EDI Server를 통하여 받게 된다. 은행에서는 Data가 존재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수정할 수가 있으며 용자가 결정되기까지 CPA와 EDI Server를 통하여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고객에게 편리를 줄 수 있고 또 이 모든 의사결정과정의 회의록처럼 기록될 수도 있다.

## CPA2BANK

### CPA와 은행이 하나되어 커뮤니티의 발전을.

CPA와 은행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조직이다. CPA와 은행 사이에는 언제나 고객이 존재한다. 결국 두 조직간의 업무과정이 불편하고 복잡하다는 것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고객이 은행용자를 신청하는 경우 고객은 은행에 비추되어있는 용자신청서류를 CPA에게 전달하고 CPA는 여러 재무정보를 정리하여 고객에게 서비스한 결과를 고객은 은행에 전달하게 된다.

현재 은행에 용자를 가진 고객인 경우 비즈니스나 용자의 성격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AR Aging, AP Aging, Inventory List, Financial Statement등 CPA가 준비한 서류를 은행에 매번 제출해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매년 용자를 갱신할 때 Tax Return, Financial Statement등 고객은 CPA와 은행의 전달자로서 불편함을 겪게되고 은행과 CPA들은 비생산적인 업무과정으로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여야 한다.

CPA2Bank는 모든 은행들의 용자신청서류 등이 프로그램 내에 준비되어있어 고객이 용자를 받고싶다는 전화 한 통이면 CPA는 CPA2Bank에서 Data를 입력하여 해당은행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은행으로 보내거나 해당은행의 신청서로 출력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용자신청이 바뀔 경우 CPA입장에서는 재 입력할 필요 없이 타 은행을 선택하여 처음에 입력한 Data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CPA 입장에서는 은행에 제출한 제반 서류들에 대한 Data를 CPA2Bank에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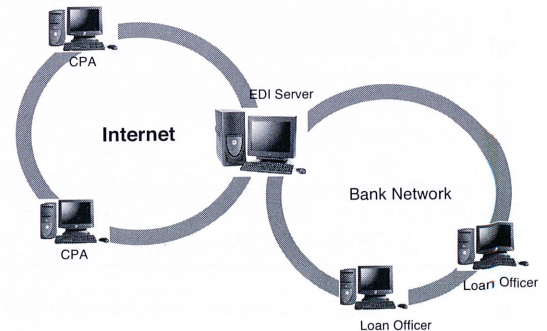
또한 매년 갱신하는 손님들을 위하여 EDI Server를 통하여 CPA2Bank로 미리 담당 CPA에게 재 서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진행을 편하고 자유롭게 도와준다. CPA2Bank는 MetaCom에서 개발되었으며 중앙은행에서 최초로 EDI Server를 구축하면서 CPA2Bank를 위한 System을 준비하게 됐다.

CPA2Bank는 CPA와 은행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주어 결국 고객의 시간을 절약하여 중간 전달자로서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System이다.

따라서 CPA2Bank는 은행과 CPA가 하나가 되어 커뮤니티의 발전을 돕는 System으로 커뮤니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은행과 CPA가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CPA2Bank에 대한문의 사항은 MetaCom(213-383-9597)으로 하면 된다.

### CPA2Bank Architecture







Greg Jeong

**현** 재 미국은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9-11 테러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Iraq 전쟁 우려로 인해 더욱더 경기가 수렁에 빠지고 있으며 deflation 조짐까지 일어나자 급기야는 연방 준비은행이 예상을 벗어나 단기금리를 0.5% 까지 내려 경기를 진정시키려는 극약 처방까지 쓰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금리인하 정책 덕택으로 부동산

## 상업용 부동산 파이낸싱 (Wall Street loan vs Bank loan)

용자시장은 엄청난 활황을 누리고 있다. 채용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으로 stock market 과 IT 산업의 침체에 대한 대체 마 으로 많은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Korean Community 내에서는 교포 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대형 부동산을 소유한 투자자들도 증가 일로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반은행 용자와 main stream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명 Wall street 용자와의 차이점을 이해해 신규투자자와 기존용자의 수익관리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Wall street investment banking 에서는 1980년대부터 상업용 부동산 파이낸싱을 하나의 중요한 수익모델로 보고 CMBS (Commercial Mortgage Backed Security) 비즈니스를 develop 해온 결과 지금은 거대한 시장이 되어 버렸다. 예를들면 Merrill Lynch, JP Morgan, Goldman Sacks, Wachovia Securities, Credit Swiss First Boston, Bear Stearns 같은 투자은행들이 활발하게 비즈니스 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GE Capital, GMAC 같은 non-banking 회사들이 뛰어들어 고유의 사업보다 financial service 사업이 기업 최대의 수익센터가 되어버린 셈이다. 예를 들면 올해 9월말 현재 General Motors는 손실을 보고 있으나 자회사인 General Motors Acceptance Corporation은 \$600 Million을 초과한 순수익을 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을 반영하면 우리교포 경제도 이제는 명실공히 주류사회의 파이낸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예를들면 A라는 Investor가 \$10,000,000

짜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통상 75%인 \$7,500,000 까지 loan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외에 renovation, partnership buyout, 또는 property conversion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mezzanine financing 이란 형태에 의해 5% - 15%의 추가 loan을 더 받아 건물을 repositioning 하는데 쓸수 있다. 1990년 초에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 차압과 더불어 개인 банкрот까지 한 악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Wall street loan은 property 자체만을 profit center로 보기 때문에 personal guaranty가 필요없는 non-recourse loan이다. 이 때문에 borrower는 single purpose entity인 LLC를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건물만 처분하고 개인은 온전한 credit을 유지 할수 있다. 반면에 long term prepayment penalty와 tough한 underwriting이 단점이다. 그러나 팔 경우에는 bank loan과는 달리 buyer가 1%의 loan assumption fee를 내고 기존 loan을 assume 할 수가 있어서 채용자를 다시하지 않는한은 부동산 매매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참고로 Wall street loan과 전형적인 은행 용자와의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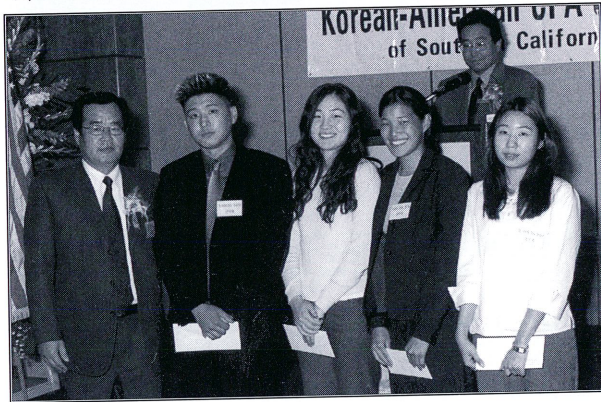
|                     | Wall street loan<br>(CMBS, Conduit) | Bank loan            |
|---------------------|-------------------------------------|----------------------|
| - Loan to value     | 70% to 100%                         | Maximum 70%          |
| - Term              | 10-25 yrs due / 30 yrs              | 10 yrs / 25 yrs      |
| - Type              | Mostly fixed                        | Mostly variable      |
| - Index             | Treasury bill                       | Prime or Libor       |
| - Personal guaranty | No                                  | Yes                  |
| - Loan maintenance  | Servicing company                   | Portfolio management |



#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 1. 20대 회장단 취임식 및 장학금 전달식

2002년 6월 28일 저녁 7시에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에서 약 300여명의 귀빈을 모시고, 20대 회장 및 임원들의 이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정 원훈 전회장님께서 Keynote speaker로서 귀빈과 임원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다. 협회의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50여명의 신청자 중 Aaron Kim, Aram Kim, Shelma Jee-Young Jun, Hayoung Kim 등 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각 \$1,000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전달식도 함께 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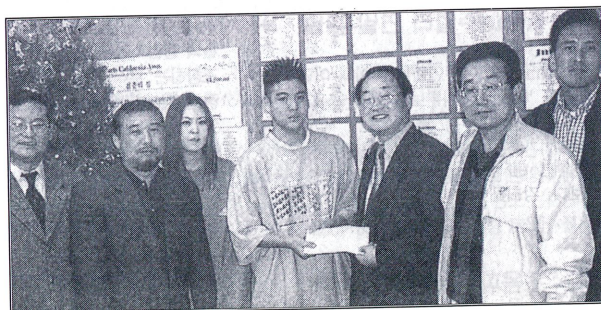


## 2. 교민대상 seminar

2002년 11월 26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에서 중앙은행과 협회의 공동 주최로 교민대상 seminar를 실시하였다. 일반 교민, 각 언론기관 관계자 및 협회회원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FDIC의 관계자가 최근 강화된 현금거래 관련 법규와 실례를 들어 주제발표가 있었고, 중앙은행의 관계자는 새로이 개발한 은행거래의 전산 시스템에 관련한 발표가 있었다. 협회에서는 임 창수, 전 석호 회원이 강사로서 교민들에게 유익한 세법관련한 현금거래 및 연말절 세방안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 3. 젊음의 집 방문

김 기용 목사가 운영하는 젊음의 집을 임원 및 회원이 방문하여 CPA라는 직업에 관하여 학생들과 자유로운 토론 시간이 있었고, 곧 이어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협회는 점심식사 및 \$1,000을 제공하여 젊음의 집의 새로운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 4. 협회주최 제2회 Tennis대회

회원들의 친선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한 tennis대회가 작년과 같은 장소인 Studio City Golf & Tennis Court에서 개최되었다. 약 40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열린 복식시합을 벌인 끝에 김 승열/김 기현 조가 우승을 차지하였고, 김 성철/Henry Kim 조가 2등, 김 윤한/여 운상 조가 3등을 차지하였다.

## 5. Bankers and CPA Golf Tournament

2002년 5월 25일 banker와 회원 약 50명이 Pacific Palm Resort의 course에서 친선도모의 골프 대회를 개최하였다.

### 조 용직 CPA

전 미주 한인공인회계사 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임기 시작

### 김 윤한 CPA

사무실 이전 새주소  
3470 Wilshire Blvd. #1010 L.A. CA 90010

### 장 두천 CPA

사무실 이전 전화번호 (714) 739-2800

### 오 영균 CPA와 이 경호 CPA 사무실 공동운영

### 장 봉섭 CPA와 임 창수 CPA 사무실 공동운영

### 전 석호 CPA

CPA에게 continuing education program을 제공하는 월셔국제대학 설립/운영.  
7월중에 NASD Series 7 course(40 credit hours)를 5주간 개설하여 20여명의 CPA가 참가하였음.

## 2002-2003 KACPA 협회임원



- ① 김승열 재무
- ② 강신용 부회장
- ③ 조성범 회원 관리 담당
- ④ Jane Kim 총무
- ⑤ 김경무 회장
- ⑥ 전석호 회원 관리 담당





SBA용자 및 각종 비즈니스 용자

투자

다양한 금융 신상품

Free Checking

콤비플러스

주택용자

자동차 용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고객을 가장 먼저, 고객을 우선으로 모시는 세심한 정성이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미은행 고객들의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규모와 명성에서 앞서온 20년 전통을 바탕으로

고객서비스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한미은행을 만나보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꿈의 씨앗을 풍성한 결실로 꽃피워 드리겠습니다.



www.hanmi.com



Olympic 323-735-3737 Vermont 213-384-4040 Downtown 213-347-6051 Garden Grove 714-537-4040 Western 213-388-2200  
Wilshire 213-427-5757 Koreatown Galleria 323-730-4830 Cerritos 562-924-8001 Hacienda 626-854-1000 Gardena 310-965-9400  
Irvine 949-262-2500 San Diego 858-467-4800 Torrance 310-781-1200 Trade Finance 213-427-5757 SBA 213-427-5761  
Auto Loan 323-730-2896 Credit Card 323-730-4884 Residential Mortgage 213-413-4663 Investment 323-730-4886



# “저는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가 여러분의 종합재정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김운성, CLU, ChFC, CPA  
Vice President License# CA 0B51099  
AXA Advisors

많은 사업가들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줄 알지만 개인적인 재정계획에는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맨들의 개인적인 재정 분석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굴지의 종합자산관리 회사인 AXA ADVISORS에서 일하는 김운성입니다. 우리는 은퇴자금, 연금플랜, 상속계획 등 고객들의 재정목표를 달성하는 일들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력을 하나씩 쌓아가듯 신뢰감을 가지고 고객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재정계획 및 자산관리 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AXA ADVISORS**  
*Building Futures*

3435 Wilshire Blvd., Suite 2500

Los Angeles, CA 90010

**213-251-1615**

GE-99-219 AXA Advisors, LLC NY, NY 10104

